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

어린이·청소년 인권가이드라인을 제작하면서...

오늘날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인권이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닌 많은 국민들에게 중요한 삶의 조건으로 점차 인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2012년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청소년이 누려야 할 인권을 명문화하고, 인권종합계획 수립·시행, 인권교육 개발 및 보급 등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조사(2017.4.)에 의하면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 이후 어린이·청소년 인권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어린이·청소년 및 부모의 인권교육 이수율, 가정 내 신체적 폭력과 방임, 노동 안전 문제 등 일부지표는 2012년 대비 하락하여 오늘날 어린이·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제고 및 인권기준 확립 등 다양한 청소년 상황을 고려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교육 등에 활용하고자, 어린이·청소년 인권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인권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중심의 설명 및 관련 법령 등을 소개하고, 인권침해가 모호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의 인권향상에 한걸음 더 나아가 갈 것을 기대합니다.

2018년 12월

서울시장 박원순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

CONTENTS



0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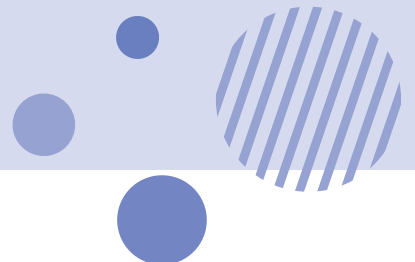
1) 어린이·청소년 인권	11
2)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 소개	14
3)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 활용방안	17

02. 성장환경과 건강에 관한 권리

1) 청소년 기관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고 식중독 증세가 나타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1
2) 청소년 기관 시설 환경 때문에 아토피가 심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4
3)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체육활동도 사전에 건강 체크를 해야 되나요?	29
4) 청소년 기관에 비치된 상비약을 청소년에게 임의로 투약해도 되나요?	33
5) 청소년 기관 매점에서 카페인 음료를 팔아도 괜찮은가요?	37
6) 청소년 기관 내 수영장을 이용하던 청소년이 다친다면 기관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40

03.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

1) 청소년을 훈육할 때 지도자가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47
2) 청소년들 사이에 폭력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51
3) 청소년이 가정에서 학대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55
4) 청소년들 사이에 사이버폭력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61
5)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청소년이 도움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65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

CONTENTS

04.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받을 권리

1) 청소년이 기관 홈페이지에 지도자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73
2) 캠프 중 종교적 이유로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 거부를 요청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77
3) 학교에서 허용하지 않는 집회에 청소년들이 참가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81
4) 청소년 기관에서 만든 신문에 청소년이 사회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85

05.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에 관한 권리

1) 청소년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청소년 기관에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91
2) 청소년 기관에 온 청소년의 가방에 술과 담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94
3) 활동 중에 휴대폰 게임을 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98
4) 기관에 설치된 CCTV로 인해 청소년 인권이 침해되고 있지 않은가요?	101

06. 교육·문화·복지에 관한 권리

1)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특정 대상(전과나 징계받은 청소년, 병력이 있는 청소년, 임신한 청소년)을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해도 되나요?	107
2) 장애청소년이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다면 필요한 시설을 마련해야 되나요?	111
3)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참여 대상 청소년의 성별을 제한해도 되나요?	117
4)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나요?	121
5) 기관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의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25





07. 노동에 관한 권리

- 1) 아르바이트를 금지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31
- 2) 청소년이라고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137
- 3)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143

08. 자기결정권 및 참여할 권리

- 1) 봉사동아리에 활동하던 청소년이 활동 중간에 탈퇴의사를 밝힌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49
- 2) 시·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구조변경 등에 대해 청소년들이 의견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52
- 3) 위급한 상황에서 청소년이 종교적 이유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157
- 4) 부모님이 반대하는 집회에 청소년이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60

09. 안전에 관한 권리

- 1) 기관에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나요? 165
- 2) 청소년 활동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제도와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나요? 170
- 3) 정규 활동 시간 외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지도자의 책임이 있나요? 173
- 4) 사고 위험이 있지만 꼭 해야 하는 활동이 있다면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76
- 5) 물놀이 등 야외 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나요? 180

부록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187

01 서론



1 어린이·청소년 인권

1)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정의

- 국제협약에서 어린이·청소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 언급되고 있음
 -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모든 인류는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역사상 최초로 국제조직에 의해 채택된 인권 관련 선언
 - 제1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이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담은 협약
 -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에 비준함.
 - 어린이를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주체로 규정함.
- 국내 어린이·청소년 관련 실정법에서 이들의 인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음
 - 「아동복지법」은 어린이가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이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등 청소년 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현황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존중 만족도 높은 반면 실생활에서의 차별 경험률 높음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은 가정, 학교, 지역 등 가까운 환경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반면 실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음. 2015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의 전국 데이터와 서울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성별·성적·나이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비율이 전국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특히 가정에서 차별과 욕설을 경험한 비율이 전국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학교에서는 눈에 보이는 차별(체벌과 욕설)이 감소했을 뿐, 교육비를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이나 징계받은 학생의 징계내용과 이름을 알리고, 개인의 시험성적을 공개하는 등 학생의 정보 공개에 대해 무감한 실태를 보이고 있었음.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의 근로·안전 등의 영역에서 인권 보장 필요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의 근로 관련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이 자유롭게 뛰어들고 활동할만한 장소나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범죄로부터 안전한 동네 환경 조성을 포함하여,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의 발달적 측면에서의 인권 보장 및 향상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함.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대상 인권교육이나 인권 관련 정보제공 수준은 낮은 편임

- 「2017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에 따르면 인권교육을 받은 어린이·청소년은 45.4%로 나타나, 2012년 같은 조사결과(60.8%)에 비해 그 비율이 감소함.
- 청소년 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어린이·청소년(각각 60.3%, 57.8%)보다 시설이용 경험이 없는 어린이·청소년(각각 41.3%, 40.7%)이 인권교육 경험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청소년 권리 정보제공에서는 시설종사자는 2017년 79.5%로 2012년 71.6%보다 증가한 반면, 교사(59.2%)와 부모(16.9%)의 정보제공은 2012년 교사(87.3%), 부모(37.3%)보다 감소하여 학교 및 가정에서 인권 관련 정보제공 역할이 미흡한 수준을 보임.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에게는 실제의 삶에 적용되는 실질적 인권 관련 정보와 인권의식 및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 속 인권교육이 필요함.

○ 현재 서울시는 시민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활발히 진행 중임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됨.
- 이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가 제정됨.

3) 어린이·청소년 인권가이드라인 필요성

- 어린이·청소년과 가까운 환경에서 인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청소년 기관은 학교 외에 청소년들의 또 다른 생활공간으로, 기본적으로 청소년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서 존중받으며 활동하는 공간이어야 함.
 - 이에 청소년 기관 내 청소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건강, 안전과 같은 보호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자기표현과 같은 발달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함.
 - 추상적이고 막연한 이론이나 조례 등 실정법 중심의 법률 조항 내용을 제시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들과 인권 이슈들을 탐색하여 각각에 대한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2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 소개

○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의 목적

-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개념, 인권실태와 사례, 인권보장을 위한 판단기준 마련
- 청소년 기관에서 지켜야 할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기준 확인
- 청소년지도자와 관련 기관 종사자, 청소년정책담당자 등 청소년 현장 전반에 청소년 인권 인식의 개선과 인권 침해 예방에 기여
- 어린이·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상담 및 구제기능 강화

○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 구성의 근거

- 세계 인권 선언, 유엔 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에서 제시된 인권의 개념과 유형 분석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판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의 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분석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의 어린이·청소년 인권 유형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안전권을 포함하여 인권의 유형을 구조화하였음.
- 인권 관련 사례는 청소년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FGI(초점집단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제시하였음.

○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

〈성장환경과 건강에 관한 권리〉

- 1) 청소년 기관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고 식중독 증세가 나타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2) 청소년 기관 시설 환경 때문에 아토피가 심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3)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체육활동도 사전에 건강 체크를 해야 되나요?
- 4) 청소년 기관에 비치된 상비약을 청소년에게 임의로 투약해도 되나요?
- 5) 청소년 기관 매점에서 카페인 음료를 팔아도 괜찮은가요?
- 6) 청소년 기관 내 수영장을 이용하던 청소년이 다친다면 기관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1) 청소년을 혼욕할 때 지도자가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2) 청소년들 사이에 폭력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3) 청소년이 가정에서 학대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4) 청소년들 사이에 사이버폭력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5)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청소년이 도움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받을 권리〉

- 1) 청소년이 기관 홈페이지에 지도자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2) 캠프 중 종교적 이유로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 거부를 요청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3) 학교에서 허용하지 않는 집회에 청소년들이 참가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4) 청소년 기관에서 만든 신문에 청소년이 사회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에 관한 권리〉

- 1) 청소년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청소년 기관에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2) 청소년 기관에 온 청소년의 가방에 술과 담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3) 활동 중에 휴대폰 게임을 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4) 기관에 설치된 CCTV로 인해 청소년 인권을 침해되고 있지 않은가요?

〈교육·문화·복지에 관한 권리〉

- 1)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특정 대상(전과나 징계받은 청소년, 병력이 있는 청소년, 임신한 청소년)을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해도 되나요?
- 2) 장애청소년이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다면 필요한 시설을 마련해야 되나요?
- 3)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참여 대상 청소년의 성별을 제한해도 되나요?
- 4)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나요?
- 5) 기관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의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노동에 관한 권리〉

- 1) 아르바이트를 금지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2) 청소년이라고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3)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결정권 및 참여할 권리〉

- 1) 봉사동아리에 활동하던 청소년이 활동 중간에 탈퇴의사를 밝힌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2) 시·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구조변경 등에 대해 청소년들이 의견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3) 위급한 상황에서 청소년이 종교적 이유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4) 부모님이 반대하는 집회에 청소년이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전에 관한 권리〉

- 1) 기관에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나요?
- 2) 청소년 활동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제도와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나요?
- 3) 정규 활동 시간 외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지도자의 책임이 있나요?
- 4) 사고 위험이 있지만 꼭 해야 하는 활동이 있다면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5) 물놀이 등 야외 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나요?

○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의 구조

- ‘궁금해요’에서는 청소년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권관련 사례를 제시함.
- ‘이 사례는요’에서는 궁금해요의 사례에 대한 인권관련 쟁점을 분석하여 제시함.
- ‘알아봐요’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한 법적근거와 판례를 통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가이드라인 사용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음.
- ‘이렇게 해요’에서는 청소년 기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판례와 결정례 및 관련법률’에서는 궁금해요의 사례와 관련된 판례와 결정례 및 관련법률을 제시함.
- ‘참고해요’에서는 궁금해요의 인권 사례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함.

3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 활용방안

- 서울시 청소년 수련시설 및 유관 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비치하여 종사자들이 수시로 열람하고 기관에서 인권 관련 사안 발생 시 판단기준 자료로 활용함.
- 서울시 청소년 수련시설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자료실에 e-book형태로 게시함으로써 학부모, 일반이용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기관과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권 교육 자료로 활용함.
-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직원 및 강사 대상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인권 관련 사안 발생 시 판단기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본 인권 가이드라인은 청소년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원 강사 등 청소년 대상 지도자 누구나 활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인권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02 성장환경과 건강에 관한 권리



1 청소년 기관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고 식중독 증세가 나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궁금해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캠프에 참가했던 중학생들이 설사, 구토, 열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수련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50여명 모두 같은 증상을 보여 집단 식중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 기관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나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식품위생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 이번 사례는요

최근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식재료로 보관해온 청소년 수련 시설이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에 연관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해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으로 식품이나 물의 섭취에 의해 발생합니다. 본 사례와 같이 청소년 기관에서 식품위생으로 인해 건강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식품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 알아봐요

청소년 기관에서 식중독 발생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식품관리 모든 단계에 대한 탐색조사 및 사전 확인을 통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식품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원아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과 어린이집 환경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여 살모넬라균 감염에 의한 식중독을 야기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중독균은 4℃에서 60℃ 사이 온도에서 증식합니다. 따라서 뜨거운 음식은 60℃ 이상으로, 찬 음식은 4℃ 이하로 보관하면 세균의 증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균의 번식 속도는 세균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35~36℃ 내외에서 번식 속도가 가장 빨라 여름철에 세균성 식중독의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식중독은 미생물의 독소에 의해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소화관에서 흡수되지 않고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상만 일으키는 경우가 많지만, 세균이 장벽에 붙거나 뚫고 들어가서 발생하는 식중독은 구토나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과 함께 열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의 경우 장벽 신경 마비, 근육 경련, 의식 장애 등의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름에는 기온 상승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이 급증할 수 있으므로, 집단 급식시설이 있는 청소년 기관에서는 음식물을 취급·조리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요

청소년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식품을 관리하는 재료보관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식품 재료 중 부패, 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합니다. 식품 등의 보관, 운반, 진열 시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킵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것은 금물이며, 위생관리를 위해 정기소독을 실시합니다. 특히 식품관련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여름철에는 더욱 주의하여 관리합니다. 또한 집단급식의 경우에는 식품 재료뿐만 아니라 조리기구나 조식시설의 오염, 조리원의 불량한 위생 상태를 통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점검 사항을 리스트화하여 일정한 시간에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와 결정례 및 관련법률

법률신문 2006.6.29.

전북 완주에서 청소년 수련원을 운영하던 이모씨는 수련원에 입소한 초등학생 등 학생 215명에게 식중독균에 감염된 음식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2000년 7월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김밥을 유치원생 213명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울산지법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2008.5.20. 선고 2007가단78469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음식물을 비롯하여 원아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 환경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하여 피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원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여 살모넬라균 감염에 의한 식중독에 걸리게 하는 바,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청소년 기관 시설 환경 때문에 아토피가 심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궁금해요

아토피 질환이 있는 A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합니다. 방과후아카데미 교실이 지하에 있어서 습기가 많은 장마철이나 건조한 겨울철에는 아토피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이 환경성 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 이번 사례는요

환경성 질환은 환경오염물질이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유해화학 물질로 인한 중독증, 신경계 및 생식계 질환, 공기오염물질로 인한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등을 말합니다. 아토피나 알레르기 비염 등 어린이와 청소년의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기관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알아봐요

어린이와 청소년은 신경계, 면역계, 소화계 등이 미성숙하고, 체중에 비해 많은 공기와 물, 음식물을 섭취하기 때문에 유해환경 요인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과후 아카데미에 소속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고 활동영역이 바닥 면에 가깝기 때문에 실내 환경요인에 더욱 민감하여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환경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 기관에서는 환경성 질환을 유발하는 먼지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뿐만 아니라 곰팡이나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청소년 기관 운영자와 지도자는 시설에 대해 관리책임은 지는데 여기에는 곰팡이나 진드기, 미생물 등의 물질에 대한 관리 책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곰팡이인 Toxic Mold로 인한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노인이나 어린이처럼 면역력이 약한 경우에는 곰팡이가 핀 공간에 머물지 말고 당장 이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법원에서는 곰팡이 발생으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주인이 수리의무를 진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보험사에게 상당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기관에서도 먼지나 알레르기 유발물질, 시설풀, 습기, 환기,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통해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청 소	청소가 소홀하면 먼지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청소와 소독 및 해충 구제작업을 하여 청결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설물	균열, 누수나 틈새의 점검과 문제가 있는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합니다.
습 기	누수나 수분 응축으로 생긴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과 관련 있는 곰팡이나 진드기, 미생물 등의 성장을 촉진하고, 건물 구조에도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누수를 막고, 습기가 많은 곳은 제습기를 놓는 등의 관리를 해야 합니다.
환 기	환기가 잘 안되면 먼지 등 오염물질이 쌓여 감염성 질환 발병 우려가 있습니다. 평소에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되, 황사예보와 미세먼지예보가 있는 날이나 주변에 오염유발시설이 있다면 오히려 환기가 실내공기오염을 높일 수 있으므로 기상 예보에 맞추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화 학 물 질	생활용품이나 활동에 사용되는 교구(책, 실험도구 등) 등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눈, 피부, 코, 목을 자극하거나 신경계 질환 등 건강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생활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품 설명서를 통해 성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 시설물 관리, 곰팡이 제거와 습기관리, 환기, 화학물질 관리 등 시설 환경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제안합니다. 청소년 기관의 책임자는 당해 시설의 환경 위생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환경위생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환경물질 관리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유지관리 기준을 참고하세요.

판례와 결정례 및 관련법률



Ballard v. Fire Insurance Exchange, No.99-05252 Travis Co., Texas, Dist. Ct.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Stachybotrys와 Memnoniellin 곰팡이를 Toxic Mold라고 부르는데, Toxic Mold 때문에 질병을 얻게 된 사람들이 제기한 소송들이 승소판결을 받고 있다. 가장 유명한 Toxic Mold 소송은 75만불 상당의 주택 소유자가 Fire Insurance Exchange보험사를 상대로 주택보험증권상 수리의무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사건이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8조(성장환경에 관한 권리) ① 어린이·청소년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비상 상황에 처하거나 입양될 경우 자신의 이익이 가장 먼저 고려되도록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9조(건강) ① 어린이·청소년은 자연 환경과 어울릴 기회를 가지고 충분한 햇볕과 쾌적한 공기, 적절한 녹지가 확보된 공간에서 필요한 영양을 공급 받으며 거주·활동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등 보건·의료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참고해오

* 학교시설 유지관리기준

항 목		주요 유지·관리 기준	
환 기		1인 1시간당 21.6m ³ 이상	
채 광 및 조 명	자연조명	주광율 5% 확보/최소 2% 이상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가 10:1 이하 반사물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인공조명	300룩스 이상 (책상면, 칠판면)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가 3:1이하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온·습도	실내온도	18℃ ~ 28℃ (난방: 18 ~ 20℃, 냉방: 26 ~ 28℃)	
	비교습도	30% ~ 80%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 등	미세 먼지	PM10	100(μg/m ³)이하
		PM2.5	35(μg/m ³)이하
	이산화탄소	1,000 (ppm)이하{단, 기계식환기시설은1,500 (ppm)}이하	
	폼알데하이드	100(μg/m ³)이하	
	총부유세균	800(CFU/m ³)이하	
	낙하세균	10(CFU/실당)이하	
	일산화탄소	10(ppm)이하	
	이산화질소	0.05(ppm)이하	
	라 돈	148Bq/m ³ 이하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400(μg/m ³)이하	
	석 면	0.01(개/cc)이하	
	오 존	0.06(ppm)이하	
	진드기	100(마리/m ²)이하, 진드기알레르겐(10μg/m ² 이하)	
상·하수도	관련규정에 의하여 설치 관리		

항 목		주요 유지·관리 기준
화장실	설 치	남녀구분, 수세식 및 충분한 면적과 수량 확보 손 씻는 시설 및 소독시설
	소 독	4월~9월 : 주3회 이상, 10월~익년 3월 : 주1회 이상
폐 기 물		발생감량 및 분리배출
소 음		55(dB)이하(교사 내)
식기·식품		청결유지, 위생적 보관 및 관리
먹는 물	급수시설	상수도 : 직결급수 공급 원칙 지하수 : 저수조 경유
	유지관리	저수조 : 매월 1회 이상 점검, 연 2회 이상 청소 먹는 물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제공
점검·지원		시설장 : 일상 정기 특별점검 실시 후 조치 관리부처 : 점검방법 지도 및 전문 인력 지원, 실태조사 실시

출처 : 「학교보건법」 제4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3조의3,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교육부 고시 제2018-154호)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3조제1항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5항

3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체육활동도 사전에 건강 체크를 해야 되나요?

? 궁금해요

매주 1회씩 두 달 동안 풋살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날도 평소처럼 준비운동을 하고, 간단하게 안전교육을 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주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던 청소년 A가 활동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 후 다행히 더 큰 문제없이 회복되었습니다. 항상 해 오던 활동인데도 매번 참가자들의 건강 상태를 사전에 파악해야 하나요?

📖 이번 사례는요

청소년의 안전은 생명에 관한 인권의 측면에서 지켜져야 할 중요한 권리입니다. 교육이나 활동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의 안전관리 노력에 대한 요구가 점차 강화되고 있고, 그 지침 또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익숙한 활동, 항상 활용해온 기기, 공식적으로 안전이 검증된 시설을 활용한 활동과 같이, 안전에 대해 무더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지도자의 안전의식은 더욱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참가자들의 사전 건강상태 확인의 필요성 및 고려사항에 대해 이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알아봐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안전종합매뉴얼(활동지도자용)에는 청소년수련활동 운영단계에 필요한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중 지도자 확인 항목으로, ‘참여 청소년의 인원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였는가, 신체적·정신적 불편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없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였는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전에 참여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일은 활동의 안전을 기하는 기본적 절차일 뿐만 아니라, 향후 이와 관련된 상황 발생 시 그 책임여부를 결정짓는 데에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학교 주최 행사인 5Km 달리기 대회에 참가한 학생이 달리는 도중에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사망한 사안에서, 학교의 교장이나 담당교사가 참가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이유로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4. 선고 2003가합51601). 이러한 결정에 대한 이유 중 하나로, '참가학생들을 상대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거나 운동능력을 측정하는 등으로 신체 및 건강상태 등에 대하여 조사한 적은 없었다'는 사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참가자의 건강관리에 대하여는 그 보호·감독의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활동의 내용과 특성을 파악하여 참여자들에게 미칠 수 있을 영향력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 법원이 학교의 주의의무에 대해 적용한 기준을 토대로, 활동 수행 전에는 첫째, 활동의 실질적 내용 및 특성을 파악해야 하고, 둘째, 활동의 목적이 참가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참가하기에 부적합한 대상을 제외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응급구조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례와 법령 및 관련법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9.14. 선고 2003가합51601

◎ '이렇게 해요' 인용 내용

- 사전에 파악할 사항

① 활동의 실질적 내용 및 특성 파악

– 판례 중 관련 내용 : '이 달리기대회는 중·고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체력검사의 한 종목인 1,200m 오래달리기 운동보다 훨씬 장거리인 5km의 거리를 제한시간 50분 내지 60분 내에 달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장거리를 달리는 운동은 호흡순환기 계통에 지속적인 부하를 가하는 전신적 운동이기 때문에 평소 체력이나 건강상태, 운동능력, 대회 당일의 건강상태, 준비운동의 유무 등에 따라서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하여 심장 등 순환기 등의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운동임.’

② 활동의 목적이 참가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력 파악

- 판례 중 관련 내용 : ‘대회 출석 및 달리기 참가 여부, 완주시간, 순위 등 참가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둔 일정 점수를 정규 교과목인 체육 점수에 반영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내신성적에 민감한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거나 성적에 대한 압박감 등으로 인하여 평소 체력이나 건강상태, 운동능력, 당일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회에 출석하여 달리기에 참가하거나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게 무리하여 달릴 수도 있음.’

◎ 취해야 할 조치

① 참가하기에 부적합한 대상 제외

- 판례 중 관련 내용 : ‘이에 대회를 개최함에 앞서 사전에 학생들의 건강기록부를 확인하거나 개인면담을 실시하는 등 상당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신체 및 건강상태 등을 면밀히 검사하여 달리기대회의 참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학생을 참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②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응급구조체계 마련

- ‘달리기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하여서도 출발 전에 충분하고 적절한 준비운동을 시키며, 나아가 이 사건 달리기 대회가 5km에 달하는 장거리를 달리는 운동이고 차량접근이 통제된 장소에서 실시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달리기 코스인 산책로의 주요 지점에 일정 간격으로 교사나 의료진을 배치하거나 또는 신속한 연락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 사건과 같이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구조를 할 수 있는 응급구조체계를 갖추어야 함.’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9조(건강) ③ 어린이·청소년은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며, 회복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기회와 공간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의3(건강상태 확인 방법) 제1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한

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
2. 별지 제6호 서식의 건강상태 확인서(개인)
3.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건강상태 확인서(단체)

[전문개정 2014. 7. 2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9조의3(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의무 등) ① 제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 및 보호자(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다)가 해당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서면으로 보증한 때에는 신고자가 건강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② 신고자는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의료조치가 필요하거나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6) 참고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2016). 안전종합매뉴얼(활동지도자용).

4 청소년 기관에 비치된 상비약을 청소년에게 임의로 투약해도 되나요?

? 궁금해요

활동 중 두통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찾아왔습니다. 시설의 상비약 상자를 열어보니 여러 종류의 진통제가 있었어요. 각 약들의 설명서를 읽어봤는데 전문적 용어로 쓰인데다가 내용이 너무 많아서 각각 어떤 상황에 적합한 약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단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진통제를 한 알 먹었는데, 한 시간쯤 지나서 이 청소년이 다시 찾아와 어지럽고 메스껍다고 합니다. 약이 독한가 싶어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하고 간이침대에 눕게 하고 지켜보았습니다. 1시간 정도 후에 일어나더니 괜찮다고 하며 집에 갔습니다. 기관에 상비약을 구비하고는 있는데, 지도자가 임의로 청소년에게 투약해도 괜찮은가요?

📖 이번 사례는요

이 사례는 활동 중 두통이나 복통 등을 호소하는 청소년에게 지도자가 진통제와 같은 상비약을 제공하는 관행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최근 편의점에서도 간단한 진통제와 소화제 등을 판매하는 분위기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청소년에게 간단한 진통제를 제공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약물 제공과 같은 의료적 처치는 청소년의 신체적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그 효능이 잘 알려진 약이라 하더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알아봐요

기존의 약을 비슷한 증상에 임의 판단하여 복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증상이라 하더라도 다른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원인에 따라 사용되는 약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열제나 기타 약물을 임의로 먹이기보다 신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여 처방지도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응급상황 대처와 관련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안전종합매뉴얼(활동지도자용)에는 청소년수련활동 단계별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도자 확인

항목을 살펴보면, 계획단계에서는 ‘긴급 상황 시 응급처치가 가능한 지도자의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는가’를, 운영단계에서는 ‘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비상연락처와 지도자간 비상연락망에 이상 없는가’와 같은 항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토대로 활동 현장에서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이 상황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응급처치는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협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이렇게 해요

이 사례의 초기 상황은 당장 생명에 지장이 있어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 또는 약국을 방문하여 전문가와의 상담 이후에 복약지도를 받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부 활동으로 인해 병원 또는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진료과목별로 자문을 구할 지역사회의 약사, 의사 등 의료진의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것을 제안합니다. 반면,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바로 119에 신고하시고, 구급대원과 통화하며 필요한 처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기관에서 상비약을 구입할 때 약사로부터 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투약시 주의할 점을 메모하여 약에 붙여 놓아 투약 시 지도자들이 보도록 합니다. 캠프나 야외 활동 등 약품이 많이 필요한 경우는 활동 안내서에 비상약품의 종류와 투약시 주의할 점을 포함하고 지도자 사전 교육 시 전달합니다. 상비약을 투약하게 될 경우 지도자가 해당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판례와 법령 및 관련법률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9조(건강) ② 어린이·청소년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등 보건·의료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⑥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사이에 증가하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청소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참고해요

- * 사고발생 시 대응절차(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 안전종합매뉴얼)

사고발생 시 대응절차

사고 발생 직후

- 마음을 진정시키고 냉정하게 판단한다.
- 자신과 사고자 이외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도 주의한다.

상황 및 사고자 상태 파악

- 전체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한다(사고인원, 원인 등).
- 구조실시가 가능한 지를 판단한다(응급기관 연락).
- 응급처치를 실시한 후 후송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한다.

관계자 연락

- 소속 기관 및 관계 기관에 연락한다.
- 보호자에게 연락한다(사고내용, 부상수준, 보호자의 역할 등 정확한 안내 필요).
- 보험회사에 연락한다(배상을 위해 확보할 자료 등 확인).

사고의 기록

-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정확히 기록한다.
- * 기록내용 :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의료기관은 어디인지 등 최대한 상세히 기록하고 목격자의 연락처 등을 확보한다(사진, 영상자료 활용).
- 사고의 기록은 보고 및 사고사례 전파 등에 활용한다.

*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중앙응급치료센터)

1. 응급상황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 주변에 기름이나 가스 같은 위험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기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한다.
- 혼자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2. 무엇을 할 것인지 알아본다.

- 먼저 현장 상황 및 주변 환경이 안전한지 파악하고, 환자 상태를 확인한다.
- 응급한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제공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절대 환자를 임의로 이동시키면 안 되는 상황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 안전종합매뉴얼)

- 이동이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추가적 손상을 야기할 경우
- 손상 부위가 머리, 목, 척추, 목, 허리, 몸통(갈비뼈) 등이라고 의심될 경우
- 몸통 등 주요 부위에 손상을 입었을 때
- 안전한 곳에서 발생한 질병이더라도 손상의 이유 등이 외상이나 법적 증거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반드시 119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상황 》

(중앙응급치료센터)

- | | |
|----------------------|------------|
| • 기도폐쇄 | • 마비환자 |
| • 호흡곤란이나 숨을 쉬지 않는 경우 | • 중독환자 |
| • 심장마비 | • 물에 빠졌을 때 |
| • 심장질환이나 흉통 | • 심한 화상 |
| • 의식이 없는 경우 | • 전기 손상 |
| • 심한 출혈 | • 자살기도 |
| • 척추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 • 분만 |
| • 경련환자 | |

5 청소년 기관 매점에서 카페인 음료를 팔아도 괜찮은가요?

? 궁금해요

중학생 A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독서실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피곤하고 졸려서 잠을 쫓을 수 있도록 '에너지 드링크'를 구입해서 마시려고 수련관 내의 매점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수련관 내 매점과 자판기에서는 A군이 원하는 카페인이 들어 있는 음료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A는 사무실로 올라와 왜 수련관에서 카페인 음료를 팔지 않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에너지드링크와 같은 고카페인 음료를 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런 사례는요

위 사례와 같이 많은 청소년들이 카페인의 각성효과를 이용하여 학습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커피를 마시거나 에너지드링크를 음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와 청소년이 카페인 음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에너지드링크 등의 고카페인 음료를 청소년 기관에서 판매해도 될까요?

알아봐요

에너지드링크 속 부작용을 유발하는 성분은 '카페인, 당분, 타우린'으로 이 성분들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에너지드링크는 단시간에 고효율을 내기 위해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졸음을 예방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능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심리적으로는 불안, 짜증, 신경과민 등을 일으켜 우울증을 악화시키거나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육체적으로는 심장이나 소화기관에 악영향을 줍니다. 카페인 일일 섭취 권장량은 성인 400mg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이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크니 조심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에너지드링크의 경우

30~100mg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데, 에너지드링크 하나만 섭취한다면 적지만 커피나 초콜릿 등을 추가로 섭취할 경우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할 위험이 있습니다. 더 붙어 지속적으로 카페인을 섭취하면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드링크에 함유된 당분에 대한 부작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당분은 적당히 섭취할 경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에너지의 원료가 되지만 에너지드링크에는 지나친 양의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조사 결과 한 병에 무려 각설탕 13개 분량의 당분이 포함된 에너지드링크 제품도 있었습니다. 이는 일일 권장량인 25g의 3배를 넘는 수준으로, 에너지드링크를 자주 마실 경우 비만, 당뇨 등의 성인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에너지드링크 속 타우린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타우린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이로운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타우린 역시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신진대사에 악영향을 미쳐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노폐물인 요산을 배출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타우린의 일일 권장량은 3,000mg인데,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드링크 1병에 들어있는 타우린 함량은 1,000~2,000mg 정도입니다. 권장량 또한 성인 기준이므로 청소년의 경우 하루 최대 1명이내여야 하므로 가급적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우수판매업소¹⁾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실제 많은 청소년들이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지만 고카페인의 위험성,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카페인, 당분, 타우린이 유발하는 부작용을 예방하려면 에너지드링크는 하루 한 번, 한 병 이상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 간이나 신경계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섭취를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에너지드링크를 마실 때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적정량만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기관에서는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지 말아야 하며, 청소년들에게 에너지드링크의 부작용을 알려서 섭취를 자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판례와 결정례 및 관련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 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참고해요

* 국민청원

우리나라는 2018년 4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민청원안전검사제 게시판에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에 대한 국민청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식약처는 청소년은 에너지음료 한 캔만 마셔도 카페인 일일 최대 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카페인에 대한 유혹을 받지 않도록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에너지 음료 등 고카페인 음료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음료제품 등을 사기 전에 카페인이 어느 정도 들어 있는지 제품에 표시된 함량과 주의 문구를 확인하고 드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술과 섞어 같이 마실 경우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이트클럽에서 판매를 규제하고 있으며, 호주는 의약품(pharmaceutical products)으로 분류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에너지음료를 약국에서만 판매하고, 스웨덴은 15세 이하에게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8년부터 켄터키주, 마인주, 미시간 주에서는 18세 이하에게 에너지 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6 청소년 기관 내 수영장을 이용하던 청소년이 다친다면 기관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 궁금해요

청소년 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 다니는 A는 수영강습을 마치고 탈의실로 가다가 바닥에 있는 전선을 밟았습니다. 바닥에 고인 물 위에 있던 전선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었고 이를 밟은 A는 감전되어 그 충격으로 쓰러져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습니다. 청소년 기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기관은 어떤 책임을 질까요?

📖 이번 사례는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에 의해 청소년 기관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제시된 청소년 기관에서 발생한 청소년의 감전 사고는 청소년 기관 내·외부의 환경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관 발생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청소년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점이 고려되어야 할까요?

🗣️ 알아봐요

청소년 기관에는 추락사고, 감전사고 등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요소가 존재합니다. 특히, 위 사례와 같은 감전의 위험은 시설물의 설치와 관리상의 하자로 발생되므로 평소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가배상법 5조에서는 시설물의 설치와 하자에 대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 758조에서도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기관에서도 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기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기관도 학교와 같이 국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민간이 운영이 하는 시설의 책임의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기관에서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과 설치물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만일에 발생할 안전사고를 위해 '위험표시'를 하거나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해 사전에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향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사고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위 사례와 같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출입을 금지하거나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대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요

위 사례와 같은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량하거나 고장난 전기기기는 사용을 금지하고 전기가 새어나가는 누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누전차단기의 정기적인 점검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습기가 많은 장마철이나 수영장과 같이 감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누전차단기의 차단 버튼을 눌러 누전차단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기기기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도록 절연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지도자가 사고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당할 수 있는데, 현실상 자신의 노력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기준에 근거한 시설관리 매뉴얼과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두고 그것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기관의 관리자가 안전기준에 근거하여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기관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사용의 제한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업무상 주의를 다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이용자들은 이용제한을 의도적이거나 부주의로 위반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처럼 제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이용자들이 이용제한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제한구역에 출입하거나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 기관에서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여 세밀하게 주의를 주고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위반사항을 지적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용제한 위반으로 말미암아 초래될 안전상의 위험을 신속히 제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 7. 4. 선고 2016고단471

만 4세의 피해자가 수영장 내의 출입이 제한된 물에 들어갔다가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결국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수영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의 출입제한구역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을 근거로 업무상과실을 인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7. 선고 2014가합572340

수심이 얇은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를 다친 투숙객에게 호텔 측이 수 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로써 호텔은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호텔이 수영장 바닥과 벽면에 수심표시를 했지만 이용객들이 들뜬 마음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다이빙을 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기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 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 점검이나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시기,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 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안전교육)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위생점검)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17조(놀이 및 쉼 권리) ③ 어린이·청소년은 안전한 놀이공간과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1조(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위생점검 절차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참고해오

* 종합 안전·위생 점검 분야 및 내용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11조 3항 관련)

점검 대상 분야		점검내용
1. 안전·위생 분야 공통		가. 안전 관련 보험 가입 여부 나. 설계도서 및 각종 서류 구비 여부 다. 법정 안전·위생관리자 선임 여부 라. 법정 안전·위생점검 실시 및 교육 이수 여부
2. 안전	건축	가. 지반상태, 구조체의 변형·균열상태·노후화 등 구조 안전성 나. 지붕마감, 내·외부마감, 창호 등 건축마감 상태 및 누수여부 다. 재난관리, 안전관리 등 건축물 관리 상태
	토목	가. 옹벽, 석축 및 담장의 구조부 침하, 균열, 전도 여부 나. 비탈면 유실 여부 등 관리 상태 다. 배수로, 집수정, 맨홀 등 청소 및 관리 상태

	기계	가. 급수·급탕설비, 오수설비, 우수설비, 위생기구 등 개별 설비의 누수, 부식, 균열, 파손 여부 나. 열원기기, 공조기기 등 공기조화·환기설비의 누수, 부식, 파손 여부 및 정상 작동 여부
	소방	가. 소화설비(소화기구, 소화전 등),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 방송설비 등), 피난설비(유도등, 피난기구 등) 정상 작동 여부 나. 소화활동설비(연결송수관, 제연설비 등), 소화용수설비 및 피난·방화시설(피난계단, 방화문 등) 관리 상태 다. 위험물(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 관리 상태
	전기	가. 절연저항 측정 시 기준치 부합 여부 나. 누전차단기 및 배선용차단기의 설치 및 작동 여부 다. 전선의 규격품 사용, 피복 손상 여부, 콘센트의 적정 관리 상태
	가스	가. 가스 용기, 압력조정기, 가스계량기, 밸브, 호스 등 가스 설비 작동 상태 나. 배관 설치기준 준수 및 가스누출 여부 다. 연소기, 과압안전장치, 가스누출 차단장치 등 작동 상태
3. 위생	가. 급식 시설 위생관리, 식재료 보관 및 위생관리 상태 나. 조리장, 급수시설, 보관시설, 화장실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다. 원료의 사용, 공정관리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라. 수질검사 실시 여부	
비고 : 종합 안전·위생점검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각각의 해당 안전·위생기준을 준수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함.		

03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



1 청소년을 훈육할 때 지도자가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궁금해요

수련관 활동에 참여하던 청소년이 모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서 청소년지도자에게 혼이 난 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찾아왔습니다. 해당 청소년은 지도자가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왜 이럴까? 정신차리지, 정신차리지!”라고 말하게 하여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청소년지도자의 이러한 행동은 청소년을 위한 정당한 훈육일까요?

📖 이번 사례는요

오랜 기간 동안 학교와 청소년지도현장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훈육 또는 학생지도방안의 하나로 신체의 일부(예 : 손, 주먹, 발 등)나 물건(예 : 회초리, 빗자루, 몽둥이, 출석부, 대걸레자루, 야구방망이 등)으로 학생을 때리는 체벌이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청소년에 대한 체벌이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일선 교육 현장에서 체벌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체벌은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을 주는 정서폭력과 언어폭력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말로 수치심을 들게 하거나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게 하는 형태의 훈육 방법도 청소년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청소년 기관에서 지도자가 청소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말로 훈육한 것도 체벌과 같이 청소년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알아봐요

전통적으로 훈육의 수단이었던 체벌은 직접체벌과 간접체벌로 구분됩니다. 직접체벌은 신체의 일부나 도구로 청소년을 때리는 등 몸에 고통을 주는 행위이며, 간접체벌은 때리지 않는 않지만 손을 들거나 무릎을 꿇게 하는 등으로 신체의 고통을 주거나 괴로를 정도로 운동 시키기, 노력봉사 등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제시된 지도자의 훈육 방법은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준 경우이며, 여기에는 욕설이나 의도적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폭력과 방임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체벌을 폭력으로 인정하는 시민의식은 높지만, 말로 모욕을 주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는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에서는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를 통해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배상책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기관에서 잘못된 훈육으로 인해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본 사례와 같이 청소년들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전체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청소년을 부끄럽게 한 것은 정당한 훈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소년들의 행동에 대한 지도자의 태도와 반응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도자의 반응에 따라 청소년들의 분위기가 순응이나 반항 쪽으로 달라지기도 하고 청소년들의 기분이 만족이나 불만족으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청소년들이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서 해소해 주고,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청소년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지도자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과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소년에게 훈육을 하지만 훈육방법에 따라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불안감, 우울증, 강박증, 적개심 등의 부정적 감정을 가지게 되고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으로 양성될 위험이 크므로,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참여하면서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진행을 방해하며 다른 청소년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보조교사에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게 하여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는 것을 청소년에게 알려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판례와 결정례
및 관련법률



대법원 2004.6.10. 2001도5380

교사는 학생지도에 있어서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며,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을 때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지도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낮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건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정도가 지나치게 된 지도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체벌을 한 교사의 행동을 처벌하였다.

헌법재판소 2006.07.27. 2005헌마1189

우리나라는 징계방법으로서의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타 지도방법으로서도 훈육·훈계가 원칙이고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체벌행위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헌법 소원에서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에서 체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벌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절차와 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하며, 체벌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면서 교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인권조례」

제10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어린이·청소년은 모든 종류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성폭력, 학대, 착취, 괴롭힘, 비하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특히 소수자 어린이·청소년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유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이 폭력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청소년의 폭력피해 실태를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비폭력적이고 평화로운 가정 및 교육환경,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등) ⑧ 학교의 장은 법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청소년들 사이에 폭력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궁금해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들끼리 휴식시간에 시비가 붙어 다투었습니다. B가 휘두른 주먹에 A의 코뼈가 부러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청소년 기관에서 발생한 청소년들의 폭력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폭력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이번 사례는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기관에서 일어난 학생 대상 폭력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본 사례와 같이 청소년 기관에서 발생한 청소년들 사이의 폭력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고 향후 폭력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 알아봐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교육법에 의해 학생에 대해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를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보호·감독의 의무는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합니다.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품과 행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감독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에 있어서 그 가능성이 예측될 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의 실태와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될 위험성을

회피하여야 함에도 충분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성품과 행실,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고의 예측가능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청소년 기관의 운영자나 청소년지도자도 청소년에 대해 보호와 감독의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청소년 기관의 운영자와 지도자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시간에는 폭력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행동과 태도, 상호 관계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사고발생을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빠르고 신속하게 개입하여야 합니다. 청소년 기관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지도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사건을 축소하거나 무마시켜서는 안되며 학교 폭력 처리 방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 기관의 운영자와 지도자는 폭력사건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간의 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경우, 해당 학생들의 부모와 학교 및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알려야 합니다. 피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 신고를 미루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워지고 추가적인 가해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학교폭력신고와 예방교육, 상담은 전화(117), 문자(#0117)로 가능합니다.

나아가 청소년 기관에서는 청소년활동을 진행하면서 폭력사건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 사이의 폭력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폭력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 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과 상담을 통해 폭력발생을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또래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사건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판례와 결정례 및 관련법률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그 고통과 정신장애로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경우, 다른 요인이 자살에 일부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과 자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교사와 교장,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폭력피해학생의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인정하였다.

대구지법 2015.4.3. 선고 2013가단9021 판결

지방자치단체 갑이 설립·운영하는 중학교에서 학생 을이 휴식 시간에 다른 반 학생 병의 얼굴을 때려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자, 병과 그 가족들이 담임교사, 교장,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개학 직후부터 상해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담임교사와 교장이 여러 차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지도 등을 실시하였고, 을이 병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의 증거가 없으며, 상해가 다음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잠깐의 휴식시간에 교실과 분리된 공간인 휴메이스에서 갑자기 일어났고, 사건 당사자인 학생들의 반이 달랐던 점 등을 고려하여 담임교사나 교장이 이 사건 상해 발생을 예측하였다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인권조례」

제10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어린이·청소년은 모든 종류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성폭력, 학대, 착취, 괴롭힘, 비하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소수자 어린이·청소년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유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③ 어린이·청소년이 폭력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④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청소년의 폭력피해 실태를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비폭력적이고 평화로운 가정 및 교육환경,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청소년이 가정에서 학대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궁금해요

A양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올 때면 A양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청소년지도자는 이 사실을 알고 A양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지만 A양은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더 큰 위험 상황에 처할 두려움, 사회적 낙인 등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거절합니다.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례는요

가정에서 부모의 폭력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은 가족의 일로 여겨져 잘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했을 때 부모의 친권과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도자의 의무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아봐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아동 학대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또는 방임, 아동을 매매하거나 구걸을 시키는 등의 행동이 있습니다. 아이를 때리거나 욕 등의 폭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이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모는 친부모와 계부모가 모두 해당됩니다. 형제나 자매가 가해자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7년 발표한 아동학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신고하거나 일반상담 등으로 의심사례를 알린 것은 34,185건이었고 서울시는 3,836건이었습니다. 신고사례를 분석한 결과 실제 아동학대 사례는 전국 22,157건, 조기지원사례 2,297건, 일반사례 797건 등으로 나타났고 서울시는 아동학대 사례 2,233건, 조기지원사례 221건, 일반사례 394건이었습니다.

어릴 때 학대를 당한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상처를 입게 되고, 더 나아가 장기적인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는데, 가장 심각한 결과는 피학대 아동의 사망입니다. 울산 계모 사건(울산지방법원 2013고합309호)은 2013년 계모의 상습적인 학대로 인해 7세 여아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와 유사한 외국의 사례는 2013년 발생한 영국의 '다니엘 펠카(Daniel Pelka)' 사건입니다. 4살된 다니엘 펠카는 계부로부터 수개월동안 감금과 구타, 체벌 등을 받아오다가 계부로부터 머리를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계부는 다니엘을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계부에게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최소 구금기간을 30년으로 정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은 청소년 기관과 청소년 지도자의 의무입니다. 청소년 기관 운영자와 지도자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대상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지도자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학대를 받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학대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제1항).

이렇게 해요

위의 사례와 같이 지도자가 아동학대사례나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하게 되면 관계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록 청소년이 도움을 거부하더라도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 내용은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정보, 아동이 위협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포함합니다. 다만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후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취하고, 검찰과 법원은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학대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와 결정례 및 관련법률



울산지방법원 2013고합309호

계모의 상습적인 학대로 인해 7세 여아가 사망한 사건으로 피고인인 계모는 피해 아동에 대한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여 오던 중 아동이 소풍을 가기 위해 식탁 위에 놓아둔 현금 2,300원 상당을 훔치고도 또 다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약 35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잠시 후 피해 아동이 “미안해요 엄마, 소풍을 가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자 반성하지 않고 변명을 한다는 이유로 재차 격분하여 20분 동안 피해 아동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늑골 16개의 골절로 인한 흉부 손상이며, 그 외에도 두정부, 후두부, 측두부에서 두피하출혈과 뇌 실질에서 뇌부종 등이 관찰되었으며, 향문 부위에 걸쳐 광범위한 피하 연부조직의 섬유화 및 부분적인 만성 출혈이 발견되었다. 1심에서 울산지방검찰청은 살인죄를 적용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인 계모가 피해자의 신체와 정서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 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으로 선고하였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2. 1. 17., 2017. 10. 31.>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4. 12.]

참고해요

*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번호	체 크 항 목	체 크 란 <input type="checkbox"/>	
1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번호	체 크 항 목	체 크 란 <input type="checkbox"/>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9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2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 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 아동학대와 관련한 정의 및 처벌내용

■ 신체학대

-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하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권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처벌

-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상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 등으로 처리 가능함. 특히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시 무기 및 5년 이상 징역에 처함.

■ 정서학대

-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처벌

-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학대처벌법상 체포/감금치상, 협박(미수), 특수협박(미수) 등으로 처리 가능함.

■ 성학대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 처벌

-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학대처벌법상 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 강제추행(미수), 준강간, 미성년자 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으로 처리 가능함

■ 방임·유기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물리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교육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의료적 방임), 아동을 버리거나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지는 행위(유기) 등을 의미합니다.

※ 처벌

-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학대처벌법상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학사, 유기 처상 등으로 처리 가능함

4 청소년들 사이에 사이버폭력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궁금해요

기관의 청소년동아리 구성원들 간 갈등을 겪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느 날 동아리 활동을 하는 청소년 A가 찾아와서 같은 동아리 구성원들과의 채팅 내용을 보여주며, 자신이 따돌림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욕설, 조롱 등이 난무하여 사이버폭력인 것은 확실했습니다. 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폭력에 대해서는 명백히 개입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이런 사례는요

청소년들이 사이버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타인을 괴롭히는 것은 학교 폭력의 한 유형으로 범죄행위입니다. 가해행위가 명백한 오프라인 폭력과는 달리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피해자의 고통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사이버 폭력은 죄책감이나 가해행위 사실이 잘 인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관의 물리적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지도자의 책임이 분명한 반면,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지도자의 개입이 적절할지, 나아가 어떤 개입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알아보요

사이버폭력은 피해자에게 물리적 힘을 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특성으로는 가해행위의 집단성, 빠른 전파성, 시공간 제약없는 가해와 피해 기록의 영속성, 은밀한 폭력방식, 가해자의 죄책감 인식 부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오프라인 폭력보다 더 일상화되기 쉽고 그 피해의 폭이 넓을 수 있습니다.²⁾

2)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대학생 한국 인터넷드림단(2018. 07. 02.), '사이버 폭력이란?'.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179931&memberNo=35053505>

사이버폭력은 사이버언어폭력, 사이버 갈취, 사이버따돌림 등의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사이버언어폭력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로 위압을 가하거나 정서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둘째, 사이버갈취는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게임 아이템 등을 강제로 뺏는 행위로, ‘와이파이셔틀’, ‘게임셔틀’ 등으로 표현되는 범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상대방을 따돌리거나 안티활동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카톡방에서 나가도 계속 다시 초대하여 나가지 못하게 하고 괴롭히는 ‘카톡감옥’, 단체 카톡방에서 고의로 한 명만 두고 모두 나가버리는 ‘방폭’ 등의 형태가 포함됩니다.³⁾

인터넷에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사이버 폭력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상대방을 협박하고 그 협박이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면 ‘단순 협박죄’가 성립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주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계속해서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 청소년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성인의 관리감독 의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4년 미국 조지아 주 항소 법원에서는 자녀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부모의 관리감독 의무 소홀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지며, 폭력 상황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학교의 노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제6조). 청소년 기관 역시 이러한 책임을 가져야 하며, 여기에는 사이버폭력 또한 포함됩니다.

이렇게 해요

청소년 간의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의 한 유형이므로 지도자가 빠르고 신속하게 개입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개입할 때에는 사이버폭력 당시의 피해가 발생한 해당 글, 글이 게시된 일시, 사이트 주소 등과 함께 작성 글 게시자 및 피해자가 확인되도록 작성자 아이디 등을 촬영하는 등, 카카오톡, SNS, 메일 등의 화면을 세밀하게 기록하도록 합니다. 이 때 피해자 아이디 등이 실명이 아닌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SNS 등 함께 활동 중인 지인으로부터 참고인이 진술서를 확보하는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⁴⁾ 이러한 자료를 확보한 후 상담센터인 헬프콜(1388), 안

3)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대학생 한국 인터넷리더단(2018. 07. 13.).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해 알아보기’.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289231&memberNo=35053505&vType=VERTICAL>

전드림(117)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경찰서 신고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⁵⁾ 나아가 기관 이용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판례와 결정례 및 관련법률



美법원, “자녀 페이스북 포스팅, 부모가 책임져야”

15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 주 항소 법원은 지난 10일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한 7학년 남학생이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 급우 여학생을 괴롭힐 사건에 대해 부모가 자식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결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4)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대학생 한국 인터넷드림단(2018. 07. 24.). '사이버 언어폭력 대처방안은?'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360199&memberNo=35053505&navigationType=push>

5)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대학생 한국 인터넷드림단(2018. 07. 16.). '사이버폭력의 심각성과 예방대책'.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220152&memberNo=35053505&navigationType=push>

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고해요

1. 헬프콜(<http://www.cyber1388.kr>)

- 전화 상담 : 1388 또는 지역번호+1388로 전화, 365일 24시간 운영
- 문자 상담 : #1388번으로 문자로 상담 실시
-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1388과 친구맺기 후, 상담 실시
- 사이버(인터넷 채팅) 상담 : www.cyber1388.kr 에 접속해서 채팅방 참여
- 전화, 문자, 사이버상담 모두 무료로 이용

2. 안전드림(<http://www.safe182.go.kr/>)

-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드림 게시판에 접속 신고
- 전화신고는 국번없이 117
- 문자신고: #0117 누르고 신고내용 문자로 전송
- 스마트폰 사용자는 안전드림 애플리케이션(앱) 다운 받아 신고 가능

3. 도란도란(<http://www.dorandoran.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17
- 문자상담: #0117 누르고 상담내용 문자로 전송
- 인터넷상담: www.wee.go.kr

5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청소년이 도움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궁금해요

상담 중 15세 청소년 A가 성인 B에게 그루밍성폭력(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가하는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청소년 A는 '이것은 성폭력이 아니다. 절대 부모나 경찰에 알리지 말아라, 알리면 센터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지속되면 아이의 피해가 너무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번 사례는요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이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사실을 인지하면 이에 대해 개입해야 합니다. 이 때 청소년이 거부하면 실질적 개입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상담기관 종사자의 경우 아동학대, 성폭력 피해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면서도 내담자의 비밀을 보장해야 할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상담이 치료 목적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주변에 공개하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자의 결정은 어떠한지 할지에 대해 이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알아봐요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게는 '위기개입', 즉 일차적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개입하는 긴급구조 활동이 필요합니다. 위기개입이 필요한 상황에는 '심한 학대를 당했거나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신체·심리적 기능이 많이 손상되어 긴급하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⁶⁾ 더불어 청소년 기관 종사

6) 노성미, 류은수, 채종민, 이승희(2010). 위기개입(제4판). 한국청소년상담원.

자는 자신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더불어 최근 청소년성범죄의 대표 유형인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루밍은 상대의 신뢰를 얻기 위한 의도적 행동으로, ‘친구 되기’, ‘베이비시터 자청하기’, ‘한부모 자녀와 친밀해지기 위해 그 부모에게 데이트 신청하기’, ‘아동·청소년의 집 근처에서 자주 마주치기’와 같이, 평범해 보이거나 아동·청소년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적 행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로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될 가능성이 높고, 폭력이나 협박보다 유인행동을 하기 때문에 성폭력이라는 개념이 부족하여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특성을 보입니다.

위 사례와 관련하여 성폭력의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이란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자신의 성적 즐거움을 위해 강제로 하는 성적 행위 모두를 일컫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서는 ‘아동 성폭력’을 ‘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고, 임상적으로는 ‘발달단계가 앞선 사람이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에게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해 일어나는 성적 행위’를 아동 성학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얼마나 심한 행동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동의여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동이 저항하거나 충분히 싫다는 표현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모두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⁷⁾

미국이나 유럽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기술적 정의 대신, ‘동의를 유무’, ‘관계의 대등성’, ‘강요성’을 성폭력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합니다. 동의는 ‘Yes’라는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yan & Lane, 1997⁸⁾).

- 연령, 발달수준, 경험에 근거하여 어떤 의미인지 이해
- 사회의 표준적인 반응 이해
- 발생할 수 있는 결과 및 다른 선택도 가능하다는 것 인식
- 동등하게 존중된다는 전제
- 자발적인 결정일 것
- 정신적·지적 능력이 있을 것

7)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홈페이지(<http://www.child1375.or.kr>)

8) Ryan, G. & Lane, S. (1997). *Juvenile Sexual Offending: Causes, Consequences, and Correction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 성폭력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만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강간죄를 범한 경우 그 죄질의 무거움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또한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이렇게 해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행위는 모두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판단이나 생각, 성의식이 성숙하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설종사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인지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성폭력의 심각성, 성착취 정도 등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고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 시 더욱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 판단된다면, 청소년 스스로 문제임을 인식하도록 여러 번에 걸쳐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전문상담가에게 연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범죄가 발생한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수사기관으로서도 증거확보가 어려워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신고하지 않는 기간 동안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청소년에게 이에 대해 설명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7), 청소년 폭력상담사례 윤리적·법적 대응 매뉴얼).

특히 사례에 언급된 ‘그루밍’은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자는 지속적으로 청소년을 관찰하면서 청소년 스스로 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와 결정례 및 관련법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신고의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참고해요

*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해바라기센터(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 통합지원센터) <http://www.help0365.or.kr/>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http://www.child1375.or.kr>

■ 위기개입이 필요한 상황들

- 12시간 이내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 가출 등의 사유로 집에 돌아갈 수 없고, 당장 숙식제공을 해야 하는 경우
- 심한 학대를 당했거나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신체 심리적 기능이 많이 손상되어 긴급하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 탈 성매매를 원하거나, 조건만남 등 청소년의 성을 사고파는 행위 및 유사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어 지고, 내담자 스스로 이를 해결하려는 욕구를 표현하는 경우
- 기타 시설종사자 등의 판단이나 청소년의 절박한 요청에 의해 긴급한 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처 : 노성덕 외(2010). 「위기개입(제4판)」. 한국청소년상담원

■ 온라인 그루밍 여부 판단 기준

- 온라인 상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nude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
- 온라인 상에서 내 nude 사진을 누군가와 공유했고 그들이 나를 협박할 때
- 웹캠 상에서 당황스런 뭔가를 내가 했고, 누군가가 나에게 추잡하게 대할 때
-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 실시간 중계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했을 때
- 온라인 상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실제로 만나자고 계속 요청하고 내가 그것에 압박감을 느낄 때
- 온라인 상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성관계에 대해 말하고 내가 불편함을 느낄 때
- 온라인 상에서 누군가가 내가 하길 원치 않는 것을 하라고 압력을 줄 때
-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사적으로 말을 걸었을 때

출처 : 영국 '아동착취와 온라인 보호센터(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 CEOP)'

04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받을 권리



1 청소년이 기관 홈페이지에 지도자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궁금해요

우리 센터에는 4명의 청소년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중 A지도자가 엄격한 선생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모두 청소년들의 인권을 존중하지만, 여러 청소년들이 함께 지내는 시설이므로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조금은 강한 훈육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A지도자가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청소년들이 A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며 그 불만들이 기관 사이트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A지도자를 비판하는 글들로 인해 기관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졌고, A지도자의 이미지에도 오해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번 사례는요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민주사회 유지를 위해 개인이 보장받아야 할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이며 청소년들도 그들의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민주시민 능력을 키우기 위해 특별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생 신분인 청소년들은 재학관계와 학생의 법적지위, 교칙, 교육 관련자들의 이익 상충 등 여러 사안과 관계 속에서 학교와 청소년 기관에서 표현의 자유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 속 청소년의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내용과 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알아봐요

표현의 자유는 크게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로 나눌 수 있는데 표현의 수단이 담화, 연설, 대화와 같은 구두의 형식인 경우 언론의 자유라고 하고 서적, 간행물, 도서와 같은

문서에 의한 표현인 경우 출판의 자유라고 합니다. 청소년들도 이러한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 제 4절 12조 3항에서도 '어린이, 청소년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해놓고 있으며, 서울학생 인권조례도 학생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청소년의 주장이나 표현이 청소년 기관의 운영과 교육활동에 중대하고도 본질적인(materially and substantially) 피해를 주었거나 다른 청소년들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Tinker v. Des Moines Independent School District, 393 U.S. 503 (1969)). 여기서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피해의 의미 속에는 단순히 소란의 우려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 이러한 소란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거나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할 때야만 제한할 수 있음을 미국의 관련 대표적인 판례들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표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든지 지나치게 외설적이거나 음란적인 것, 또 모욕적인 것들 역시 금지될 수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공공장소에서 큰소리로 자신의 교사를 비난하며 트집잡는 말(fighting words)을 한 것을 교사를 모욕한 것으로 판시한 사건(Fenton v. Stear, 423 F.Supp. 767 (W.D. Penn. 1976).)이라든지, 학교 행사에서 노골적인 성적 은유로 외설적이고 음란한 내용의 연설을 한 고등학생 Fraser에게 징계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건(Bethel School District No. 403 v. Frase, 106 S.Ct. 3159 (1986).)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들의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모욕적인 말과 외설적 표현들은 그들의 표현의 자유 권리로서 보장받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모욕적인 것이고 또 외설적인 표현인지에 대해서 너무 주관적이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인 의미의 모욕이나 외설이 아닌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청소년의 표현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기관 사이트에 올라온 청소년들의 A 지도자에 대한 불만내용의 사실여부를 파악해 보고 그것이 과연 기관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는지 증빙할 만한 결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바랍니다. 만일 청소년 의견이 사실에 가깝지만 단지 이미지에 손상을 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청소년들의 의견개진을 막거나 징계를 가하게 되면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해당 청소년들과 좀 더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표현 방식이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저속하거나 음란하고 외설적 표현 등으로 지도자나 기관을 심각하게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면 단호하게 행동을 중단시키고 필요한 경우 제재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판례와 결정례 및 관련법률



헌법재판소 2002.6.27. 선고 99헌마480

표현자유에 대한 규제에 대해 규제대상이 다양하고 다기하더라도, 개별화·유형화를 통한 명확성의 추구를 포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한 경우 국가는 표현규제의 과잉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부족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표현을 인정한다.

Tinker v. Des Moines Independent School District, 393 U.S. 503 (1969).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 주의 학생들이 미국의 베트남전을 반대하는 의미로 검은색 완장을 차고 등교하려던 행동을 교장이 학교 내에서의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행동을 금지한 데 대해 연방대법원은 교사나 학생이 단지 공립학교에 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연방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학교와의 사이에 권리보장에 대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합법적인 권리보장의 범위를 탐색하고 표현의 자유가 언제 제한되고 보호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 2008. 2. 28. 07진인1146

학생인권 관련 토론회 전단지 배포에 대한 징계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학생이 같은 학교의 학우들에게 학생인권 관련 토론회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징계한 사건에 학교가 학생의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한 결정례이다. 전단지의 내용이 우리나라의 학교교육 현실에 대해 다소 비판적이고 과장된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전단지의 교내 배포절차와 위반 시 징계에 대한

명시적 학내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학교 측이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를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진술서 작성요구 등의 조사를 하고, 선도위원회 참석 공문을 교부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대한민국헌법」

-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합니다.
-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 제13조(개성과 표현의 자유) ① 어린이·청소년은 있는 그대로의 그 자신이며, 자신 또는 소속 집단이 고유하게 가진 문화와 언어 등을 간직할 권리가 있다.
- ② 어린이·청소년은 외모, 복장 등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타인과의 차이가 인정될 권리가 있다.
- ③ 어린이·청소년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캠프 중 종교적 이유로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 거부를 요청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궁금해요

중학생 A는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련관은 특정 종교 단체가 시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관장도 그 종교 성직자가 맡고 있습니다. 이번 방학에도 청소년운영위원회 캠프가 있는데 A가 캠프에는 참가하지만 기도회나 종교적 색채가 강한 프로그램을 할 때에는 빠지겠다고 합니다. 다른 장소에서 혼자 있게 될 A가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번 사례는요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 제12조에는 '어린이·청소년은 양심·사상·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어린이·청소년은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행위를 강요받지 아니하며, 특정한 종교나 사상에 대한 학습이나 행사참여를 강요받지 아니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종교의 자유도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에서 설립한 학교나 종교단체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수탁하여 운영하는 청소년 기관의 경우, 때론 기관의 종교이념에 따른 선교의 자유와 청소년의 종교의 자유가 상충되어 갈등을 빚게 되고 청소년의 종교의 자유가 제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청소년의 종교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교육활동이 진행될 수 있게 하려면 기관이나 지도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관한 것이 이 사례의 주요 쟁점입니다.

🗣️ 알아봐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종교의 자유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미션스쿨인 대광고등학교의 학생회장이었던 강익석 군(이하 '원고')이 2004년 학교에서

진행되는 기독교식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며 일인시위를 벌이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행위로 퇴학을 당했던 강의석군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6년여 기간의 논쟁 끝에 2010년 종교에서 설립한 학교에서도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강의석 군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종교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하여 운영하는 청소년 기관의 경우에도 재정 지원을 받으며 공교육 수행하고 있는 공적 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속 구성원이나 참여 청소년들에게 특정 종교적 이념이나 활동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들에게 기도를 종용하는 등의 종교적 의사표시를 강요하거나 불응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모든 조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에 따라 국공립 교육기관에서의 종교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기관에서의 청소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특정 종교 행위 참여 강요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청소년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요구할 경우에 일반 교육 과정에서 제외되어 대체할 수 있는 시설과 기회의 제공까지 허용하는 판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적 삶을 고수하고 있는 에미쉬(Amish) 아동 부모가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이 자신의 전통 교육이념에 맞지 않으니 중학교까지만 보내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허용한 Yoder 사건(Wisconsin v. Yoder, 406 U.S. 205 (1972).)을 들 수 있다. 그밖에 종교교육 뿐 아니라 성교육, 약물교육, 체육교육 등이 청소년의 종교적 신념과 심각하게 배치된다고 판단할 때는 학생의 교육참여를 제외시켜주도록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자신의 특정 종교 신념에 따라 공적 활동시간이나 장소에서 대표기도 등 종교행위를 행하거나 다른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도 제한을 받게 되며, 합당한 시간과 장소, 태도에 따른 개인의 종교의 자유 행위만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비록 종교단체가 자신의 종교적 교육이념의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소년 기관을 수탁 운영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청소년 기관은 참여 청소년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기관 안과 밖에서의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서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간혹 개인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활동참여의 불편을 호소하는 청소년의 의견과 입장은 충분히 경청하고 고려하여 활동 과정 중 부분적 제외나 대체 가능한 참여 활동의 제공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려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일부 활동에서 제외할 경우 안전한 장소에서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년과 사전에 협의하고 보조인력이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와 결정례
및 관련법률



대법원 2010.4.22. 선고 2008다38288

미션스쿨인 대광고등학교의 학생회장이었던 강의석 군(이하 '원고')은 2004년 6월 16일 교내방송실에 들어가 방송을 통하여 매주 수요일에 한 시간씩 진행되는 기독교식 예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은 수요일예배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힌다. 그 후 원고는 교육청 앞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예외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러자 학교는 '학교의 공공기물인 방송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학생회장 신분으로서 학생을 선동하였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원고에게 전학을 권유하였고 이에 불응하자 퇴학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학교를 상대로 퇴학 처분에 무효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후 그는 8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단식으로 투쟁하였고 학교는 예배선택권을 보장하게 된다. 그 후 2005학년도 서울대 법대 수시모집에 합격한 원고는 2005년 10월 7일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종교 활동을 강요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 서울중앙지법은 피고 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정하며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5. 선고 2005가단305176 판결).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학교 측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8. 5. 8. 선고 2007나102467 판결). 원심은 상고되었고 대법원은 2010년 4월 22일 종립학교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대한민국헌법」

-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4절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받을 권리

- 제12조(양심과 종교의 자유) ① 어린이·청소년은 양심·사상·종교의 자유를 누린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행위를 강요받지 아니하며, 특정한 종교나

사상에 대한 학습이나 행사참여를 강요받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3 학교에서 허용하지 않는 집회에 청소년들이 참가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궁금해요

청소년 수련관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시내에서 개최되는 정치적 촛불집회에 단체로 참가하겠다고 합니다. 학생들 소속 학교에서는 집회 참석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집회 참가 시 경찰의 경비도 삼엄하고 군중에 휩쓸려 다칠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이들의 집회 참가를 허용해야 할까요?

📖 이번 사례는요

청소년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5조에서는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며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청소년의 집회 결사의 자유의 보장은 법률로 보장된 권리일 뿐 아니라 정치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이 민주시민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참여권 행사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중고등학생의 집단적인 시위나 결사행위를 불법시하여 엄격히 제한해 온 경향이 있었고 참가한 학생에 대한 징계나 불이익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려면 어떤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 알아봐요

집회·시위의 자유도 절대적 자유가 아닌 이상 일정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금지통고 행위와 관련하여, 인권위는 경찰서장에 의한 금지통고의 자의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과 경찰청장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의 명백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즉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예측과 판단으로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되며,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의 존재를 증빙하며 금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 제한에 대해,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대체 수단을 무시하고 바로 집회의 금지 통보를 해서는 안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고등학생의 집회 결사자유 제한의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판례인 Tinker 사건에서 학생들의 집회가 학교의 교육 활동과 질서를 중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했는지 증빙할 수 있어야 제한할 수 있음을 밝혔고, 이 판결을 이끈 Marshall 판사는 집회 제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표현의 방식이 특정 장소와 특정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상 활동과 병존할 수 있는지의 여부'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같은 집단행동이라도 공공 공원에서는 허용되지만 공공 도서관에서는 금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청소년들의 집회 참여는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과 집단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서를 파괴함 없이 평화롭게 참여하는 한 금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학생 신분이나 나이 어린 청소년이란 이유로, 또 소란의 우려만으로 그들 자신과 관련된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한 집단적 의사표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단 집회 참여로 인한 안전사고나 과도한 감정적 행동으로 인한 불상사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주의사항의 숙지와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판례와 법령 및 관련법률

국가인권위원회 2016. 3. 28. 14진정0464100 집회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타인과의 의견교환을 위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 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협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3.10.30.자 2000헌바67 결정). 헌법이 집회의 자유에 관하여 헌법상의 다른 기본권과 달리 명문으로 사전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헌법 제21조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 2008. 9. 25. 07진인4150 학생에 대한 학내집회 강제 해산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학내집회를 학교 측이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강제로 해산하고, 정규수업 시간에 집체교육을 시킨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집회의 자유의 침해라고 판단하였다. '학내집회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청소년 인권단체)' 활동가인 진정인이 선동하여 발생한 집회로 학교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였기 때문에 불법 집회로 보고 학내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해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시간이 점심시간이었고, 다른 학생 및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집회가 평화적으로 전개된 점, 두발자유 및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 등 학생의 권리와 관련이 있는 내용의 집회였던 점으로 보아 이 집회를 불법집회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집체 교육시간에 학생의 정당한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훈계함으로써 향후 학생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의의사결정권 및 「대한민국헌법」 제21조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 제15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안된다.

「대한민국헌법」

-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24조(참여권) ① 어린이·청소년은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타인과 자유롭게 소통하여 동료를 만들고 모임을 가질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들의 의견을 모을 권리가 있다.

④ 어린이·청소년은 공개된 장소에서 의사를 표현하거나 행사를 열 권리가 있다.

⑤ 어린이·청소년은 단체에 참여하고 자치활동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어린이·청소년은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직접 선출하거나 선출할 방법을 스스로 정할 권리가 있다.

⑦ 어린이·청소년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⑧ 어린이·청소년은 시에서 직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한 사업과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⑨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참여활동, 자치활동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⑩ 어린이·청소년이 참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청소년 기관에서 만든 신문에 청소년이 사회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궁금해요

청소년수련관의 미디어 동아리 학생들이 신문을 발행하고 싶다고 해서 허락하였는데 기사 중에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신문을 발행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동아리 청소년들에게 다른 기사로 바꾸는 것을 권유했는데 거부하였습니다. 이럴 때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례는요

이번 사례는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신문에 대해 기관 측에서 검열을 하고 발행을 막는 것이 헌법에서 보장한 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청소년도 예외일 수는 없겠죠. 다만 표현의 정도와 내용이 기관과 사회 질서에 반하는 등 제한의 불가피함이 있었다면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알아봐요

출판물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어요. 학생들의 출판물은 일반적으로 학교출판물과 교외출판물로 나눌 수 있는데, 학교출판물에는 학교신문, 교지, 문집 등 학교의 지원을 받거나 공식적인 출판물이 포함되고 학교외 출판물에는 학교 측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신문, 유인물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발간하는 출판물들은 청소년 자신들의 견해와 입장, 주장들을 표현하면서 자치능력이나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인 못지않게 청소년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기간 동안 청소년들의 자치적 출판의 기회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학생 출판물에 대한 사전검열 등 엄격한 통제와 제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 17조에서도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관들도 이러한 조례의 취지를 살려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의 출판의 자유도 다른 표현의 자유와 같이 내용이 거짓이거나 타인이나 기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초래했거나,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외설적인 것이 아닌 한 함부로 제한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마약법, 낙태, 성병 문제 등)를 다루거나 사회적 정책이나 기관 행정에 대한 비판이 담긴 학생 출판물의 허용여부에 대해 다루었던 Shanley 사건(Shanley v. Northeast Independent School District, 462 F.2d 960 (5th Cir. 1972).)에서 법원은 ‘민주적 논쟁은 헌법적인 것으로서 특정 견해를 억누를 이유가 안되며, ...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과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독선적 견해로부터 해방시켜 나가는 과정임’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출판물에서 다른 민감한 내용이나 비판적 견해 때문에 그들의 출판의 자유가 제한되면 안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요

청소년들이 신문에서 다룬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 것인지, 특정기관이나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소지가 없는지,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외설적인 것이 아닌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서 그렇지 않다면 출판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사회 비판적 견해를 담은 이유로 출판을 불허한다면 청소년의 기본권인 출판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클 것입니다.

판례와 결정례 및 관련법률

Shanley v. Northeast Independent School District, 462 F.2d 960 (5th Cir. 1972).

텍사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만든 신문에 마약이나 낙태 등 논쟁적 이슈를 다루었던 점과 교육행정에 대한 비판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을 이유로 신문 발간이 금지되면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출판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지역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출판물 속 내용이 학생들에게 실질적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논쟁적 이슈 거론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비판 내용 만을 근거로 출판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학생의 출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을 판시하였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13조(개성과 표현의 자유) ① 어린이·청소년은 있는 그대로의 그 자신이며, 자신 또는 소속 집단이 고유하게 가진 문화와 언어 등을 간직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외모, 복장 등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타인과의 차이가 인정될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05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에 관한 권리



1 청소년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청소년 기관에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궁금해요

요즘은 오프숄더, 크롭탑, 망사스타킹과 같은 노출의상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유행에 따라 청소년들의 복장도 달라졌는데, 이러한 노출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성추행이나 몰래카메라 범죄 등의 위험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한 다른 청소년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활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염려되기도 합니다. 청소년의 두발, 복장에 대해 제재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같은 청소년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번 사례는요

청소년이 자신의 취향과 의지에 따라 외모를 꾸미는 일은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보장되어야 할 청소년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교육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 또는 위화감을 주거나, 청소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옷차림과 화장에 대한 제재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경우 청소년의 두발, 복장에 대해 제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알아봐요

서울시의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는 어린이·청소년은 외모, 복장 등을 통해서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타인과 차이가 인정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용모의 제한으로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학교에서는 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두발을 자르거나 변형시키는 것을 헌법 제 10조의 규정한 행복추구권상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언권을 침해하는 것

이고 강제이탈은 학생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권 침해의 행위라고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Massie 사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헤어스타일이나 복장이 타인에 대한 안전이나 위생 및 학업분위기 등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해를 할 만한 근거가 있거나, 교육상의 책무를 수행하는 데 두발 규제가 필요하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만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요

청소년이 헤어스타일 또는 옷차림을 통해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 속 청소년들에게도 차림새를 일방적으로 제재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멋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감정 등 내면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당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거나, 활동 분위기 저해 또는 주변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구체적인 사실이나 근거 없이 강제로 규제해서는 안 됩니다

판례와 법령 및 관련법률



Massie v. Henry, 455 F. 2d 279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한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법원에 소청한 사건으로, 자신의 헤어스타일이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이 정한 규정에 비해 길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이다. 법원은 해당 학생들의 헤어스타일이 지나치게 장난스럽고 혐오스러워 학교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게 했다는 학교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의 입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2009.12.28. 학생 두발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두발을 어떤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며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 없이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주체이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두발을 자르거나 변형시

키는 것을 헌법 제10조의 규정한 행복추구권상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강제이발은 학생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권 침해의 행위라고 판단된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13조(개성과 표현의 자유) ① 어린이·청소년은 있는 그대로의 그 자신이며, 자신 또는 소속 집단이 고유하게 가진 문화와 언어 등을 간직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외모, 복장 등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타인과의 차이가 인정될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청소년 기관에 온 청소년의 가방에 술과 담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궁금해요

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 중학생 B가 지도자에게 찾아와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A의 가방에 술과 담배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경우 지도자는 B의 가방을 뒤져서 술과 담배를 빼앗아도 되나요? 술과 담배는 청소년에게 금지된 것이고 다른 청소년들이 보기 전에 수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B의 말만 듣고 A의 소지품 검사를 해도 될까요?

이런 사례는요

학교나 청소년 기관은 여러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곳이기에, 집단생활이라는 이유로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사생활 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사생활의 의미도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폭넓게 해석하고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와 청소년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청소년 기관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정한 규칙을 통해 청소년의 사생활에 제한을 두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술이나 담배 등 규칙상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다른 학생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소지품 검사를 통해 몰래 갖고있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지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아방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자아의 독립과 행복 추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권리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1항에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7조에는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생활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지품검사, 신체수색, 사물함이나 가방 검사 등 생활지도의 차원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적법절차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왔습니다

미국의 판례 (New Jersey v. T.L.O., 105 S.Ct. 733 (1985).)에서는 학교가 다른 학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서 영장없이 학생을 수색할 수는 있지만, 정당한 이유나 긴급한 상황 등 합리적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색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교육 기관에서 학생에 대한 압수 수색이 불가피하게 허용될 수 있지만 이 과정은 합리성원칙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합리성의 기준은 소지품을 수색하면 잘못된 행위가 판명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증거가 있어서 꼭 수색할 상황이었는지 하는 점과 수색의 과정이나 방법이 학생의 나이와 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이었는지, 또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측의 지갑검사가 정당했던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소지품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방법상의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소지품검사는 해당 청소년이 청소년 기관이나 법을 위반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찾게 되리라는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방법이 검사의 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되어야 합니다. 검사받을 청소년의 나이와 성별,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과도한 방법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기관에서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제히, 또는 주기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소지품 검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가급적 비공개적으로 실시하며, 청소년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분리된 장소에서 신속하게 합니다. 소지품 검사 시 신체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별이 같은 지도자가 검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흡연과 관련된 물건을 소지하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라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 기관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동의 절차를 거쳐 비공개 장소에서 소지품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성 에 의해 실시되는 소지품 검사는 성추행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양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 소지품을 압수 하는 것은 청소년의 인격권 등을 침해 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물건을 소지한 것으

로 심각하게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도 대상학생이 강력히 거부를 하는 경우라면 무리하게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보다 거부 행위가 학생 징계 절차에 회부되어 더 엄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소지품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며 검사가 끝나면 소지품을 가능한 원래 상태로 정돈하여 두는 등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의 관리자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판단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판례와 결정례 및 관련법률



New Jersey v. T.L.O., 105 S.Ct. 733 (1985).

미국 뉴저지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두 여고생이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어 부교장실에 불려가 지갑을 압수 수색 당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담배 뿐 아니라 마약류가 같이 발견되어 학교 측이 부모와 경찰 측에 알리게 되었다. 학생 측에서 학교 측 처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측의 수색과 압수 행위가 합리적 근거와 기준, 정도에 따라 행해졌는가를 엄밀히 검토하였는데, 비록 교육 기관에서 학생에 대한 압수 수색이 불가피하게 허용될 수 있지만 이 과정은 합리성(reasonableness) 원칙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여기서 합리성의 기준은 첫째 학생의 소지품을 수색하면 그의 잘못된 행위가 판명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증거가 있어서 꼭 수색할 상황이었는지 하는 점과 둘째, 수색의 과정이나 방법이 학생의 나이와 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이었는지, 또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지갑 검사를 통해 학생의 담배와 마약이 발견됨에 따라 학교측 학생 지갑검사가 정당했던 것으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은 학생 소지품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함부로 해서는 안되며 일정한 근거와 기준에 따라야 함을 제시한 점에서 이 후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한 대표적인 판결로 알려져 왔다.

People v Bowers, 339 N.Y.S2d 78(1973).

미국에서 학교 당국의 소지품 검사에 대한 소송제기의 기본취지는 학교 당국의 소지품 검사가 법원의 영장없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수색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뉴욕법원은 학교가 다른 학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서 영장없이 학생을 수색할 수는 있지만 정당한 이유나 긴급한 상황이라는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색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상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14조(사생활의 자유 등) ① 어린이·청소년은 사생활을 보장 받고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명예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약점이 공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③ 누구든지 범죄수사나 어린이·청소년 상호간의 폭력에 대한 조사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린이·청소년의 일기장, 핸드폰 등에 기록된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3 활동 중에 휴대폰 게임을 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궁금해요

청소년 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A가 활동은 하지 않고 휴대폰 게임을 하는 것을 지도자가 보았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에 자율적으로 휴대폰을 수거함에 넣도록 하였는데 A는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A에게 휴대폰 게임을 금지하지 않으면 계속 게임을 할 것 같고, 그것을 본 주위 친구들도 활동에 집중하지 못할 것 같아 활동 중에는 휴대폰을 압수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청소년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 이번 사례는요

휴대전화는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통신을 위한 기기가 아니라 대인관계 형성, 취미 활동, 호신 수단 등으로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소지하고 게임을 하거나 SNS를 하는 등으로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주위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자유와 청소년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지도권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알아봐요

청소년 기관에서 교육목적에 따라 학생들과의 합의를 거쳐 적절한 방법으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시간 외 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 및 압수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를 청소년 기관에서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육목적을 벗어난 과도한 조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희시간에 수거했다가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규정이 헌법이 보호하는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로서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도 있음을 설명하고 학교는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공동체 내 토론으로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관련 규정이 10대 청소년들이 설 새 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게임을 하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 사용이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 고립감 해소를 위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메신저로서 긍정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의 교육활동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요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교육과 활동 방해는 물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과 제한에 대해 관심과 주의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의 사용 제한은 활동의 주체인 청소년의 합의가 전제된 절차에 따라 제한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활동의 방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지만 휴대전화의 압수 등의 조치는 임시적이고 단기적 조치로 행사되는 것이 적정하며 청소년과 합의되지 않은 지도자 일방의 임의적 조치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기관에서는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 소지 자체의 금지 등 엄격한 규제 방식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전자기기의 긍정적인 면을 잘 활용하고 시간·장소에 따라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전자기기 사용은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의 정도는 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규칙을 어긴 경우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사생활 존중, 안전한 귀가 등을 위하여 당일 본인에게 전자기기를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례와 결정례 및 관련법률



국가인권위원회 중 · 고교 휴대전화 사용제한 완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A중학교 및 B, C 고등학교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 생활 규정'과 기숙사 운영규정'이 자기행동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할 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초 · 중등교육법」

제18조의4 학교의 설립자 ·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어린이 · 청소년 인권조례」

제14조(사생활의 자유 등) ③ 누구든지 범죄수사나 어린이 · 청소년 상호간의 폭력에 대한 조사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린이 · 청소년의 일기장, 핸드폰 등에 기록된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4 기관에 설치된 CCTV로 인해 청소년 인권이 침해되고 있지 않나요?

? 궁금해요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교육장, 복도 등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한 개는 기관 뒤편 후미진 곳을 비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두 청소년이 그 장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화면에 보였어요. 그 둘이 기관으로 올라 오길래 인사도 할 겸 “너희 거기서 무슨 얘기했어? 샘 다 봤어~”하고 말을 걸었는데, 너무 놀라면서 거기 CCTV 있는지도 몰랐다고, 지금 감시하는 거냐고 불만을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기관 곳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벤 사례는요

개인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영상 등을 포함합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privacy)는 ‘혼자 있을 권리’라는 소극적 차원에서 ‘자기 정보결정권’의 적극적 측면의 의미가 강합니다.⁹⁾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곧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개인의 권익보호를 중요하게 다루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체계가 일원화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시설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지침들 또한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례를 통해 기관의 CCTV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알아봐요

‘개인정보 유출’이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와 같은 인권 침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명시하고

9) 행정자치부(2016),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 p.4

있습니다. 위 사례와 관련한 원칙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첫째, 처리 목적의 명확화, 목적 내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최소 수집할 것, 둘째, 처리 목적 내에서 처리, 목적 외 활용 금지, 셋째, 사생활 침해 최소화 방법으로 처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이에 시설에 CCTV 설치 시 관련 규정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CCTV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대상의 범주에는 매일 출퇴근하는 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시설을 가끔씩 들르는 이용자들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시설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CCTV 설치 및 운영은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원들로부터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무실 등에 CCTV를 설치하고, CCTV설치 이후에도 설치목적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기관이 진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09진인545).

CCTV로 인한 청소년 인권 침해 가능성과 관련하여, 2012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실 내 CCTV 설치가 확대되자 서울시교육청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여부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교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행위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CCTV로 인하여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모든 행동이 모두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하여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어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만큼 교실 내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청소년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의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사생활 침해 등)의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들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사용자 뿐만 아니라 가끔 들르는 청소년

이용자 또한 이러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더불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이유(목적), 설치에 필요한 조치, 설치 후 운영 시 필요한 지침들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기관이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문제는 CCTV로 인하여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다'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CCTV 운영 시 녹음이나 임의 조작할 수 없으며, CCTV영상정보를 무단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위 사례에서 관리자는 CCTV 화면을 보았더라도 청소년들에게 아는 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 및 공개해야 하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사생활 침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판례와 결정례
및 관련법률**



국가인권위원회 2009. 8. 24. 09진인545 CCTV 설치 적법 절차 미준수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이 직원들로부터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무실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을 설치하였으며, CCTV설치 이후에도 설치목적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06 교육·문화·복지에 관한 권리



1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특정 대상(전과나 징계받은 청소년, 병력이 있는 청소년, 임신한 청소년)을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해도 되나요?

? 궁금해요

- 청소년 기관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는 고교생 A가 과거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이유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구 학부모들이 찾아와 A의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을 중단시켜달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4박 5일간 진행되는 자치기구 캠프에 참가 신청을 한 B가 B형 간염보균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캠프 기간 동안 다른 청소년에게 전염될 것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청소년 기관에서 진행하는 양로원 봉사활동에 신청한 C가 임신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른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참여를 불허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벤 사례는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에서는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여러 이유 중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병력, 징계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말아야 함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기관도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들을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 기관에서의 활동들이 집단 활동인 점을 감안할 때 집단 내 다른 학생에게 미칠 피해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부득이 특정 청소년의 참여를 제한해야 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의 제한이 해당 청소년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 이 사례의 쟁점입니다.

알아반요

사례는 특정 대상 청소년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차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별이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하는 통제 형태’를 말합니다(두산백과).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입장이나 여타의 견해, 국적이나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이나 여타의 신분과 같은 모든 유형의 차별에서 벗어나서,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직업, 나이, 성별, 신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서는 제7조(차별금지의 원칙) 어린이·청소년은 나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지역, 국가,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의 사례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에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학급임원 자격을 박탈한 것은 비합리적인 차별행위라 하였고, B의 사례와 관련한 결정례에서는 B형 간염 보유를 이유로 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불허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C의 사례와 관련된 결정례는 학교가 임신한 고3학생에게 자퇴서를 받은 행위는 부당한 차별행위로서 학교의 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기관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렇게 해요

청소년지도자가 위의 A, B, C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는 판단과 결정에 있어 여러 여건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A학생의 경우 징계원인 행동과 징계수준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평소 A의 행실과 태도에 비추어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에 지장을 줄 소지가 있는지에 관한 것들을 고려하여야 하며 지도자 임의적 판단보다는 운영위원회 청소년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잘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B의 경우도 질병의 심각성과 현재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보거나 캠프 참가시 주의할 점을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C의 경우도 C의 현 상태가 계획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즉, 각 해당 청소년의 개인적 상태와 관련 활동의 성격 등을 고려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참여를 제한해야 할 것이며, 단지 과거 징계경력, 병력, 임신사실 등에만 근거해 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해당 청소년들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 판례와 결정례 및 관련법률



국가인권위원회 2012. 1. 27. 11-진정-0367600 징계처분자의 학급임원 자격박탈 및 학생 회장단 피선거권 제한

교내봉사명령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학급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학생회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비합리적인 차별행위이다. 해당 사례에서 학생이 받은 징계처분 정도가 경미하며 학급임원 자격은 학생들이 선출과정에서 판단해야 하고,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2011. 4. 11. 10진정0768600 B형 간염을 이유로 고등학교 기숙사 입사 불허

B형 간염 보유 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불허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된다는 결정이다. B형 간염은 주로 수혈이나 분만과정, 성접촉 등을 통해 전염되며 일반적 공동생활로 감염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숙사 입사를 불허할 의학적 근거가 없고, 학생의 건강상태에 대한 전문의 진단을 근거로 기숙사 입사를 금지할 정도는 아님을 제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2009. 7. 6. 09진정535 임신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 차별

학교가 임신한 고3학생에게 처음에는 휴학계를 내라고 하고, 휴학하면 검정고시를 볼 수 없다고 하며 자퇴서를 받은 행위는 C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이며 이에 대한 시정을 학교에 권고하였다. 구체적인 논거 없이 우려에만 근거해 학생에게 휴학이나 자퇴를 종용한 것은 C학습권을 침해한 부당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하였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7조(차별금지의 원칙) ① 어린이·청소년은 나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지역, 국가,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시장,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어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장애청소년이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다면 필요한 시설을 마련해야 되나요?

? 궁금해요

어느 날 기관에 전화가 왔어요. '나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청소년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시설에 엘리베이터가 있나'를 물어보시더라구요. '저희 기관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가 주로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어를 이용하시면 참여하시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기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설 형편상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이 비장애인 위주로 진행되는데 장애인을 위해 시설을 고쳐야 하나요?

이런 사례는요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제44조3항)에는 장애 어린이·청소년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을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상 학교는 장애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소년 기관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설마다 다른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 가운데 청소년 기관이 장애인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때 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프로그램 참여는 물론, 특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매우 기본적인 전제가 될 것입니다.

알아범요

장애인 인권 보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지원법」 등 많은 법률에서 알 수 있듯 장애인 인권 보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모든 청소년의 교육권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합니다.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적합한 물리적

시설과 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교육권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는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낮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등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를 근거로 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시설과 환경을 개선해왔습니다. 이에 비해 청소년 기관에서는 장애를 가진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했고, 이들을 위한 시설과 환경 개선의 노력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청소년 인권 관련 조례들에서는 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청소년 기관 또한 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복지지원법 제23조에서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기관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장애인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것은 장애인차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해요

장애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첫 걸음은 장애청소년을 특별하게 대우하기 위해 새로운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져야 할 권리를 지켜주는 행동에서부터 시작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사례에서 청소년 기관의 장애인 시설 부족의 문제를 제기한 이용자의 입장은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기관은 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교육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입구에 장애인이동통로를 설치하거나, 엘리베이터 설치, 1층 장애인전용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 판례와 결정례 및 관련법률



국가인권위원회 2017. 12. 26. 17진정0270300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미흡 수영장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함에 따라 향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미흡 시설물 사용승인 심사 시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소속기관에서 장애인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44조(빈곤·장애·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보장) ① 시장, 시설의 장 및 직원 등은 빈곤·장애·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상담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 시설의 장은 장애 어린이·청소년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을 확보하며, 자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빈곤 어린이·청소년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탈북 어린이·청소년의 적응을 지원하고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다문화가정, 이주민가정, 외국인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임신 또는 출산을 하게 된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양육지원을 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 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 ④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
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
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
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
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
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
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
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
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
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프로그램 기획할 때 참여 대상 청소년의 성별을 제한해도 되나요?

? 궁금해요

미혼모시설을 방문하여 아기를 돌보는 봉사활동을 계획 중이었습니다. 활동 홍보지에 '모성에 뽐뽐하는 청소년, 다 모여!'라고 썼는데, 남자청소년 A가 찾아와 자신도 참가하고 싶은데 남자라서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미혼모시설이고, 아기를 돌보는 일이라 사실 남자청소년의 참여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습니니다. 이런 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번 사례는요

청소년 지도자들이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성차이에 대한 편견에 따라 특정 성집단에게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인 교육활동을 진행하게 되면 청소년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큼니다. 때로는 성인지 감수성에 근거하여 성별에 따른 적합한 교육환경이 마련되어야 함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성별 간 부당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특정 프로그램에 남학생이나 여학생 집단을 배제시키는 행위가 성인지 감수성에 따른 적합한 교육행위인지 아니면 두 집단을 차별하는 인권침해 행위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사례입니다.

🗣️ 알아봐요

차별금지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법규범들에서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평등의 원칙이자 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이러한 법원칙을 이어받아 학생인권조례들에서는 학생들도 성별에 따라 자의적이거나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평등은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다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대우하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에 성별에 따른 성인지감수성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 내지는 '성인지적 관점'이란 여성과 남성이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경험의 차이에 의해 다른 이해나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특정 개념이 특정한 성(性)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를 검토하는 관심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여성과 남성의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삶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요구의 차이를 인식하며, 성별 불평등에 대한 민감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례에서 보여주는 상황은 지도자의 성인지 감수성에 따른 적절한 성 구별 행위일까요 아니면 부당한 성차별 행위일까요?

청소년의 성차별과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된 법적 분쟁의 사례로는, 성차별적인 입학제도, 결혼과 임신한 여학생의 퇴학처분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여성 운동을 기점으로 점차 여성의 결혼과 임신으로 인한 차별을 금하고 있으며, 미혼모를 함부로 징계하거나 퇴학시키는 것을 위법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커져왔습니다. 때로는 임신부 학생이 원할 경우 특별 학급에 배정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배려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성인지 감수성에 따른 배려와 구별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체육활동에 여학생들을 제외시키거나 요리수업 활동에 남학생을 제외시킨 사례 등에서는 대부분의 법원이 부당한 차별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축구 게임에 여학생을 제외시킨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Hoover 사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여학생의 건강상 안전을 위해 운동 경기에서 제외시켰다는 기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강상 안전 위험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있는데, 남학생에 대한 참가 제한 규정은 없는 반면 여학생들 전체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위법한 차별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활동에 있어서, 성별 특성이라고 볼 수 없는 사안을 이유로 참여를 구별하는 행위는 부당한 차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청소년활동에서 성별 참여의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단, 성 인지적 청소년 활동이 되기 위해 여자청소년의 생리현상 등 특별한 생물학적 특성에 따른 배려가 필요한 경우인지 파악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제시된 봉사활동은 특별히 성별 특성에 따른 고려나 배려를 요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홍보문구를 수정하여, 성별 상관없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판례와 결정례 및 관련법률



Hoover v. Meiklejohn, 430 F.Supp 164(D. Colo, 1977)

남녀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을 조직 운영하는 콜로라도 주의 한 체육단체에서 축구경기 리그에 여학생 참가를 제한하자 이에 반발한 여학생이 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에서, 여학생들의 신체적 상해나 위험을 고려해서 여학생 참여를 제한하였다는 협회 측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신체적 상해나 위험 요인에 대한 일반화는 특정 성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녀학생 불문하고 일관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약한 남학생에 대한 참가 제한 기준은 없는 채, 여학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여학생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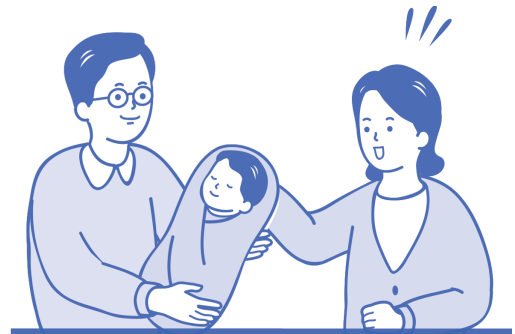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나요?

? 궁금해요

기관에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과 그 부모님이 함께 캘리그라피로 가훈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프로그램 홍보물에 '부모님 참여 필수'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인 A는 지도자에게 찾아와, 자신은 캘리그라피를 하고 싶은데 한국인인 아버지는 직장 때문에 참가하기가 어렵고, 외국인 어머니는 한글을 잘 몰라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을 싫어하시는데 꼭 부모님과 함께 참석해야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프로그램을 바꾸어야 하나요?

📖 이번 사례는요

오늘날 한국에서 새로 결혼하는 10쌍 중 1쌍 이상은 다문화가정이며(행정안전부, 2017), 학령기 다문화가정 청소년도 늘어나서 초등학생이 2012년 33,740 명에서 2017년 82,733 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뿐 아니라 청소년 기관에서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 개발의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선 현장에서 개발되는 프로그램 내용이나 운영에 있어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평등권이나 학습권 등 인권 침해의 소지는 없는지,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할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 알아봐요

학교나 청소년 기관의 활동과 교육과정 속에서 다문화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또 그들이 겪는 어려운 사정을 배려 받지 못한 채 교육이 전개된다면, 이들에 대한 평등권이나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0조 1항에서는 교육에 있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평등권을 보장한다 함은 단지 일반 청소년과 같은 교육의 기회를 주는 '기회의 평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핸디캡이나 결손 요인을 배려하여 보충해 주는 노력도 함께

필요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일반 교육과정 속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한국어 능력의 부족’과 이에 따른 ‘학습부진’, ‘학업 부적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¹⁰⁾ 따라서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언어능력 결손에 대한 배려와 보충적 교육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민족 다문화국가인 미국에서도 1960년대까지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언어문제 해결 노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국계 미국인 학생들과 그 부모들이 주축으로 자신들의 영어 능력 결손을 해소해줄 것을 주장했던 Lau사건을 계기로, 여러 주에 이중 언어법이 제정되거나 교육현장에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프로그램 등 이중 언어교육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에게 영어로 수업하는 공립학교에서 이들에 대한 보충교육 없이 학업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중국계 학생들에게 “단지 같은 시설, 교재, 교사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평등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학생들이 영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의미 있는 교육으로부터 배제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그들의 언어 능력 수준을 감안하여 이해와 표현이 가능한 내용과 방법으로 편성되도록 하고, 또 그들의 취약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별도의 학습기회를 같이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기왕이면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도 미국 사례와 같은 이중 언어법이나 관련 교육시스템을 제도화하여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부모들 사정과 형편을 고려해서, 가족 구성원의 프로그램 동참 여부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이번 사례에서 계획하는 프로그램은 나이 어린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부담을 줄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어 기초가 부족한 청소년과 이주배경 부모들에게 심오한 의미를 담은 가훈 만들기 활동은 언어와 문화 이해의 이중부담을 줄 소지가 큰 듯하니, 언어 능력에 상관없이 즐기면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계획한 프로그램과 관련

10) 김종훈(2018), ‘조용한 위기,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 부진’, 서울 YMCA 주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 및 사회적응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pp.53-63

된 용어나 언어 습득을 위한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함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직업상 사정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모들 입장을 감안해서 부모 동참을 필수조건으로 지정하는 것 보다는, 나중에 부모 의견을 집에 가서라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좀 더 융통성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단순히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주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학습권과 평등권을 모두 보장하기 위해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부터 세심하고 실질적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전 판례와 결정례 및 관련법률



Lau v. Nichols, 414 U.S. 563(1974)

이 사건은 1970년 샌프란시스코의 공립학교에 다니던 중국계 학생과 부모들이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영어를 잘 할 줄 모르는 자신들이 다니는 공립학교에서 영어로 수업하여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하급 지방법원은 이들에게 다른 학생들과 동등한 입학 기회와 교육과정이 제공된다는 점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거부하였지만, 후에 연방대법원에서 이들에게 동일한 교육기회와 교육과정의 제공뿐만 아니라 이들의 부족한 영어 능력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평등한 교육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원고(중국계 학생과 학부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44조(빈곤·장애·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보장) ① 시장, 시설의 장 및 직원 등은 빈곤·장애·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상담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 시설의 장은 장애 어린이·청소년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을 확보하며, 자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빈곤 어린이·청소년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탈북 어린이·청소년의 적응을 지원하고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다문화가정, 이주민가정, 외국인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임신 또는 출산을 하게 된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양육지원을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16조(교육에 관한 권리) ⑥ 시장은 빈곤·장애·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19조(복지에 관한 권리) ④ 시장은 빈곤·장애·소수자 어린이·청소년 등 자립 및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 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기관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의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궁금해요

수련관에서 영상물 제작 동아리 활동에 참여했던 중학생 B는 동아리 방에 두었던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가 없어졌다고 하며 지도자에게 찾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실내를 샅샅이 뒤져도 찾지 못하자 주변 CCTV를 검색한 끝에 같은 동아리 소속 A가 들고 나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지도자는 A에게 전화하여 노트북을 빨리 B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고 '절도행위 적발'로 동아리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가 찾아와서 훔쳐간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 쓰고 돌려 주려고 했다고 말하며 동아리 탈퇴는 억울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럴 때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사례는요

청소년 기관에서 청소년이 문제행동이나 비행을 저지르게 되면 그에 따른 징계와 처벌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비록 처벌을 받을만한 행위를 했다고 여겨지는 청소년이라 할 지라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징계가 이루어져야하며, 이러한 과정 없이 징계가 가해지면 모든 청소년에게 보장된 적법절차의 권리를 침해한 부당한 징계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처벌이나 징계 시에 해당 청소년의 어떤 절차적 권리가 보장 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아봐요

'적법절차의 권리'란 개인에게 공정한 절차를 보장해 줌으로써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개인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권리입니다. 이것이 교육현장의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일부 논란이 있지만, 청소년에게도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징계처분 과정도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8절 제25조

에서는 학생에 대한 징계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의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도 이러한 적법절차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한 대표적인 판례는 미국의
Goss v. Lopez, 419 U.S. 565(1975)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학생
에게도 적법절차의 권리가 적용되며 최소한의 절차로써 ‘징계처분의 이유와 증거에 관
한 통지’를 학생이 받아야 하고, 학생이 의견을 설명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과정에 이러한 통지와 청문
등 최소한의 절차 없이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청소년의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 부적절
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위의 사례는 공식적인 징계나 처벌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련관
내 동아리 활동에서 해당 청소년을 퇴출시키는 과정 역시 일종의 처벌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지도자는 처벌대상인 A에게 ‘통지’와 ‘청문’ 등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를
밟았어야 했는데 일반적으로 처벌 사실을 통고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에게 발견한 사실에 대한 통지와 그에 따라 A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밟아 처벌 또는 징계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판례와 법령 및 관련법률

Goss v. Lopez, 419 U.S. 565(1975)

오하이오 주의 한 학교에서 아홉명의 학생들이 학교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기물을
파괴하며 데모에 참석했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로부터 10일간의 정학처분을 받게 되자
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에서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적법절차의 권리는 의무교육을 수행하는 학생의 가벼운
처벌과정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학교측 주장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10일간의 정학
처분도 학생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서 통지와 청문 등 최소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원고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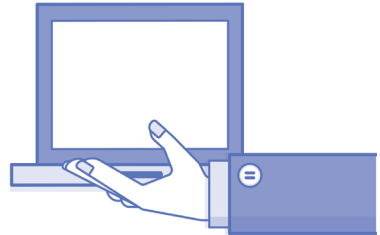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피징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의 결정 및 그 집행의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07 노동에 관한 권리



1 아르바이트를 금지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궁금해요

기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고등학생 A는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학교 선생님이 교칙에 어긋난다고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한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선생님께 그런 교칙이 왜 있냐고 물어봤더니 방과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학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이러한 교칙을 제정했다고 하는데 A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벤 사례는요

현행 「근로기준법」 상 근로 가능한 최저 연령은 만 15세입니다. 즉, 만 15세 이상인 자는 누구든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규칙 또한 학생이 교내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일종의 법으로, 아르바이트를 금지하는 학교 교칙이 있다면 그 또한 학생의 행동 결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 사례를 통해 학생이자 청소년인 A의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아봐요

현행법상 만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아르바이트와 시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칙은 「교육기본법」에 의해 보장받는 일종의 위임법입니다. 교칙으로 교내 구성원들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칙이 사안의 본질보다는 관행적 제한으로써 적용되어 왔다면 사실상 개정이 필요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지역인권사무소에서 지자체 교육청에 교칙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인권사무소는 해당 지역 학교들 중 다수가 학교 생활규정으로 '교외활동과 관련해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득해야 하거나 지도

교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러한 규정은 사적 자치영역의 과도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14-진정-0678500학내 규칙 위반에 의한 학생 외부활동 제한)는 학교 외부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에 대해 학교 허락 없이 외부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F 학점으로 처리하는 등의 처분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 근거로, 인간이 가지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헌법상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이므로, 그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 또한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위의 사례에서 고등학생 A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요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아르바이트와 시간제 근로가 가능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부모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업장에 제출할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 청소년 근로자가 근로할 수 없는 직종이 있고, 근로 가능시간에 제한 또한 있다는 등의 정보를 제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연소근로자로서 청소년이 스스로의 근로권을 인지하게 하고, 나아가 근로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노력 또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A가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활기록부 기재와 같은 불합리한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청소년 A의 경우에도 교칙에 따른 불합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자신의 근로에 대해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학교에 사전에 알리도록 지도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는 교칙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정을 하여 청소년들이 소정의 사전절차를 밟을 경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판례와 결정례 및 관련법률



국가인권위원회 2015. 6. 10. 14진정0678500

학생 외부활동 제한 관행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한 대학교가 내부규정으로 1, 2학년 학생들이 학교 외부의 영화사, 방송사 등이 제작하는 콘텐츠 출연을 제한하고 있고, 허락없이 외부활동을 하면 중요 과목을 F학점으로 처리하는 등의 처리가 학생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제한하고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20조(노동인권) ① 노동하는 청소년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노동하는 청소년은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사업주는 노동하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제21조(어린이·청소년 노동의 보호) ① 사업주는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무를 맡겨서는 안된다.

② 사업주는 청소년을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된다.

③ 사업주는 법령에 정한 최저연령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을 일하게 해서는 안된다.

제39조(노동인권의 보장) ① 사업자는 노동하는 청소년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기타의 권리를 침해한 사업장을 각종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 소속기관, 구청, 노동관련 행정관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구제활동에 대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업주에 대해 노동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노동을 하거나 전문계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필수적·우선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2 청소년이라고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궁금해요

기관에 온 고등학생 A가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피곤하다고 해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 잘 받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연장근로수당과 야근 수당은 전혀 못받을 뿐만 아니라 약속한 임금도 제때에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대학생에게는 월급도 제때에 주고 수당도 주는 것 같은데 고등학생이라고 함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A는 사업주에게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얘기를 못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점주가 어린 청소년이라 생각하고 노동착취하는 것 같은데, 이대로 두어도 될까요?

이런 사례는요

헌법은 근로의 의무와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상에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유리한 근로조건을 얻어 내기 어렵기 때문에 인간 존엄성의 원칙을 보장하는 선에서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이 때 연소근로자 또한 근로권을 가지는 근로주체입니다. 즉,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권은 성인과 동일하게 보장받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가지는 권리에 있어 성인과 차이를 보이는지, 연소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알아봐요

근로에 있어 청소년근로자가 성인과 다른 점은 연소근로자로서 근로 가능 최저 연령, 직종, 근로시간 등 이들이 성장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보호를 위한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연소근로자'란 현행 「근로기준법」 상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로, 성장단계에 있는 이들의 근로에는 신체적, 도덕적 측면에 고려된 특별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근로권익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¹¹⁾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들의 열정을 강요하면서 최저임금 등 위반의 개연성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열정페이 예방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장시간근로를 강요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¹²⁾

이렇게 해요

근로권에 있어 청소년근로자가 성인근로자와 다른 점은 오직 연소근로자로서 그 보호를 위한 조치가 있을 뿐, 근로조건과 관련된 계약에서는 차별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청소년이 자신의 근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가 해당 지역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거나 청소년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면 '청소년근로 권익센터'나 문자상담(#1388), 사이버(cyber1388.kr), 전화(1388 또는 02-6677-1429, 카카오톡(#1388과 친구맺기) 등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판례와 법령 및 관련법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노동이 평가 절하되거나 취약한 근로조건 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은 등 '노동인권의 최저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였다. 청소년도 노동시장의 한 구성원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려야 하기 때문에, 노동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권고하였다.

11) 국가인권위원회(2010),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1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7. 7. 21), '고용노동부, 프랜차이즈·열정페이 등 청(소)년 고용 사업장, 하반기 집중 감독하기로! '17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도 발표'

- 가. 근로기준법 제69조에 규정된 연소자의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주일에 5시간으로 개정
- 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을 개정하여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의 적용 확대
- 다. 청소년 근로자에게 악용되고 있는 이른바 '꺾기'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마련
- 라. 최저임금 미달 등 열악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조치로써,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7조를 개정하여 사전 통보 없는 사업장감독을 실시하고, '연소자 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
- 마.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청소년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관계법령의 주요 내용에 관한 교육과 직장 내 성희롱예방에 관한 교육을 명문화하여 이를 실시하고, 노동관계법령의 주요내용과 직장 내 성희롱예방 대책에 관한 내용을 책자로 제작 하여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배포하여 사업주가 상시 게시하도록 독려
- 바.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노동기본권, 안전과 보건에 관한 권리 및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권리 등 노동인권 교육을 필수교과과정으로 포함시키고 교육의 내용을 내실 있게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강구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2조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협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어떠한 노동의 수행 으로부터 보호 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본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여타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나.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다. 본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청소년기본법」

제52조의2(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3.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20조(노동인권) ① 노동하는 청소년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노동하는 청소년은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사업주는 노동하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제39조(노동인권의 보장) ① 사업자는 노동하는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작성·교부하고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기타의 권리를 침해한 사업장을 각종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시 소속기관, 구청, 노동관련 행정관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구제활동에 대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업주에 대해 노동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노동을 하거나 전문계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필수적·우선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해요

- *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 * 청소년 근로현장 도우미 사업

청소년 근로현장 도우미 사업

- 근로청소년에 대한 임금체불, 성희롱 폭언 폭행 등 발생 시 근로현장 도우미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업주와의 면담 중재로 문제해결을 돕는 사업
- 중재가 되지 않거나 심각한 사례인 경우 노동관서나 경찰서로 연계하고, 성희롱 성폭력 등에 대해 통합지원센터와 연계지원하는 등 관계 기관을 통한 종합 서비스 제공
-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근로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근로권익상담실' 운영
 - 전담상담사들이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중·고교를 찾아가 정보제공 및 부당처우 사례상담 등을 실시하고, 필요 시 근로현장 도우미와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지원 체계〉

- ①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접수 문자상담(#1388), 사이버(cyber1388.kr), 전화(1388 또는 1600-1729, 카카오톡(#1388과 친구맺기)
- ② 상담 근로권익 침해·부당처우 상담, 정보제공, 현장지원 의사확인
- ③ 지원 피해사실 확인, 업무면담 및 중재, 부당처우확인·신고, 관련 기관 연계 지원
- ④ 사후 조치 처리결과 확인 및 사후상담 등

* 연소자 사용 금지 직종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0 조 [별표 4]

연소자(18세 미만인 자) 사용 금지 직종 「근로기준법 시행령」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2.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3.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4.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5.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6.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
7.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을 쓰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궁금해요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A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근로계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몇 번 했지만 그 중에 계약서는 한 번 쓸까말까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너에겐 근로권이 있다, 너가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꼭 써야 한다”고 했더니 근로계약을 써도 법대로 지켜지는지도 모르겠고, 대부분의 사업주가 싫어하는 것 같아서 잘 안 쓴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그대로 두어도 될까요?

📖 이번 사례는요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나 단기근로의 형태로 근로에 임하면서 이를 본업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의 중요성, 나아가 근로권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권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이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돕고, 더 이상 위의 사례와 같은 경험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 가진이 근로권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의 중요성과 함께 이를 위한 제반 현장에서의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알아봐요

‘근로권’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자주적으로 근로 기회를 얻지 못할 때 국가에 근로 기회를 요구)뿐만 아니라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를 포함합니다. 일할 환경에는 합리적인 근로조건, 보장 등이 포함됩니다. 즉, 근로권은 자주적으로 근로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의 방해 없이 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이며, 국가에게 적극적인 정책이

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로권의 내용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가 내포하고 있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헌재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결정). 근로권은 인간으로서 근로자가 가지는 적극적 권리로, 근로권의 주체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일반국민’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이미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장래 근로관계를 예정하는 자도 포함됩니다.¹³⁾ 즉, 청소년 또한 근로권의 주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노동기본권 등 노동인권 교육을 필수교과과정으로 포함시키고 교육의 내용을 내실 있게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¹⁴⁾ 이처럼 청소년이 스스로 근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생계수단 보장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더불어 국가 입장에서도 국민의 건강한 노동이 경제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¹⁵⁾

이렇게 해요

근로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사회에서,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 중 하나로 근로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돕는 것은 청소년 지도자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이 근로권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 알고, 근로 관련 문제에 있어 불이익 당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경험과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접적 개입의 차원에서, 당장 근로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청소년근로권익센터’나 문자상담(#1388), 사이버(cyber1388.kr), 전화(1388 또는 02-6677-1429, 카카오톡(#1388과 친구맺기) 등의 지원체계 정보를 알려 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전반적 청소년근로권익 증진을 위해 기관 차원에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을 신청하셔서 청소년활동 커리큘럼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청소년의 노동권 관련 법제현황과 주요 입법과제.

14) 국가인권위원회(2010).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청소년의 노동권 관련 법제현황과 주요 입법과제.

⚖ 판례와 결정례 및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39조(노동인권의 보장) ① 사업자는 노동하는 청소년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기타의 권리를 침해한 사업장을 각종 우대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 소속기관, 구청, 노동관련 행정관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구제활동에 대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업주에 대해 노동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노동을 하거나 전문계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필수적·우선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해요

*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

1.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 만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 필요
2.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됨.
3.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18년 기준 시간당 7,530원)
5.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발소, 안마실이 있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만화 대여점, 소주방, 호프, 카페, 무도장, 성인오락실 및 도박장, PC방, 소각 또는 도살 업무, 유류(주유업무 제외) 또는 양조업장 등
6.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7.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9.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임금체불,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세요.

* 청소년 모바일문자상담(#1388) 또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1600-1729)

08 자기결정권 및 참여할 권리



1 봉사동아리에 활동하던 청소년이 활동 중간에 탈퇴의사를 밝힌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궁금해요

봉사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을 해 오던 A가 어느 날 더 이상 이 활동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중단하려는 이유를 알아보니 부모님께서 대학진학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하며 강압적으로 신청하라고 해서 이 활동에 참여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지도자로서 어디까지 참여를 독려해야 할지, 아니면 참여거부 의사를 수용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이런 사례는요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23조 ‘자기결정권’은 ‘어린이·청소년은 진로, 취미, 학업 등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이 자기결정권으로서 교육 선택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은 활동 참여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알아봐요

‘자기결정권’은 ‘사적인 영역에서 국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보장에 의한)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여기에는 교육선택권 또한 포함됩니다. 활동 참여가 청소년의 선택이 아닌 부모의 강요로 시작되었다면, 이는 청소년의 교육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활동 중단 의사를 존중하는 것 또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보장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특히 이 사례에서 제시된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의 2에서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부분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보호·양육·교육권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가급적 청소년과 부모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서로 의논하여 조정해 가는 방법을 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활동은 청소년 스스로의 자발성을 전제로 시작되어야 하고, 그 과정 중에도 청소년의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시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것을 기본으로, 과정 중에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그 이유에 대해 경청하시고, 해당 활동에 대한 참여를 지속하기에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 부모와도 의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참여를 무리하여 설득하기보다 다른 형태의 활동들을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와 법령 및 관련법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합니다.

2.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시행함에 있어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국내법 준수의 범위 안에서 갖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23조(자기결정권) 어린이·청소년은 진로, 취미, 학업 등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기본 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党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구조변경 등에 대해 청소년들이 의견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궁금해요

시설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집하여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청소년 전용 공간 확충 등 구조 변경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행정절차상 거쳐야 할 복잡한 절차들이 많아서 기존에 성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나 이사회에서 결정해 온 문제입니다. 이것이 청소년 참여를 제한하는 것인가요?

📖 이번 사례는요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사업,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청소년자치기구입니다. 동법 제4조 2항에는 ‘수련시설 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참여범위, 의견 반영 여부에 따른 제재 등 구체적 내용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사안에 따라 기관 운영상의 이유, 또는 안건을 해결하기에 청소년들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기거나, 의견개진에만 초점을 두는 등 청소년의 참여에 제한을 두거나 명목상 참여에만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청소년 참여에 제약을 두는 것이 청소년 인권 보장의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알아봐요

어린이와 청소년은 교육의 주체로서 참여와 관련된 권리를 가집니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2는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면서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 목적은 자율성의 신장과 민주 시민의 육성에 있습니다. 이에 ‘미성숙’과 같은 막연한 우려를 근거로 이들의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들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견해 존중에 대한 일반논평 12.(2009)에서 학급회의, 학생회의, 학교 이사회와 위원회의 학생대표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당사국이 아동의 견해에 정당한 비중을 부여하지 않는 형식주의적인 접근을 피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¹⁶⁾ 청소년참여는 교육주체로서 가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청소년 기관에서는 기관 운영상의 문제와 같은 현실적 제약 가운데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요

청소년이 미성숙하다고 생각하여 제안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를 청소년들과 검토하고, 자체적 해결이 가능한 사안들과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안을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위원들은 자신들의 활동조직(청소년운영위원회)이 법에 근거한 청소년자치기구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활동이 제한적이라고 느끼게 되거나, 활동에 대한 시설 측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청소년위원들은 불합리함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기관 차원에서의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 예로, 기관 내 성인세대들의 이들에 대한 이해와 소통,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위원이 스스로 무언가 하고자 할 때 기관장이나 담당지도자 등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생각들이 지속적으로 수용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적이거나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예산 운영의 주도성을 부여하는 등, 실제적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들이 미성숙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예산을 청소년 기관의 담당지도자가 직접 집행하고 관리하는 등의 문제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역할의 독립성 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 국가인권위원회,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결정문.

판례와 결정례 및 관련법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

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24조(참여권) ① 어린이·청소년은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② 어린이·청소년은 타인과 자유롭게 소통하여 동료로 만들고 모임을 가질 권리가 있다.
- ③ 어린이·청소년은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들의 의견을 모을 권리가 있다.
- ④ 어린이·청소년은 공개된 장소에서 의사를 표현하거나 행사를 열 권리가 있다.
- ⑤ 어린이·청소년은 단체에 참여하고 자치활동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⑥ 어린이·청소년은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직접 선출하거나 선출할 방법을 스스로 정할 권리가 있다.
- ⑦ 어린이·청소년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⑧ 어린이·청소년은 시에서 직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한 사업과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⑨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참여활동, 자치활동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⑩ 어린이·청소년이 참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35조(참여 및 적정 절차) ① 시설설치관리자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시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운영에 관해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시설에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등이 행하여질 경우에는 그 처분 등을 결정하기 전에, 그 어린이·청소년 본인으로부터 사정, 의견 등을 청취하여야 한다.

참고해요

* 청소년운영위원회 매뉴얼

■ 청소년운영위원회 주요활동 유형

- 회의 : 정기회의, 임시회의
- 기획활동 : 모니터링, 만족도 및 수요조사, 기관장 간담회, 교육 및 교류활동, 봉사활동, 캠페인, 기타 활동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참여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기능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참여와 모니터링
2.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참여와 모니터링
3. 시설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청소년의 의견 전달
4. 청소년의 권익과 인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청소년들의 참여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 및 시설장이 부의하는 사항

자료 :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

「2016 청소년운영위원회 매뉴얼」.

3 위급한 상황에서 청소년이 종교적 이유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궁금해요

사례1 : 활동 중 청소년 A가 다쳤습니다. 의료진이 수혈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긴급한 상황인데, A가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합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2 : 19세 청소년인 B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B는 남자친구와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만, 부모는 결혼은 절대 안 되고, 낙태를 종용하고 있다며 지도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례는요

이 사례들은 청소년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과 관련하여, 상황에 따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례1의 경우, 의료진이 판단하기에 치료를 위해 수혈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에서 종교적 이유와 같은 A의 개인적 신념으로 이를 거부한다면, 이를 자기결정권의 측면에서 존중해야 할지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반면 사례2는 B가 결혼과 출산을 결정지을 수 있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보호적 입장을 취하는 부모와의 대립 상황에서 B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알아봐요

‘자기결정권’은 ‘사적인 영역에서 국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성적 자기결정권, 생명·신체의 처분에 대한 결정권, 피임결정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기결정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1과 관련하여, 환자가 직접 ‘수혈받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한 후 진행된 수술 과정에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태에 이른 경우 의사의 선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위급한 상태에서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혈 방법의 선택을 고려하는 것을 원칙이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 되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진료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결국 수혈을 선택한 의사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으나, 이와 같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인용된 이유들을 살펴보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미성년자 환자의 치료를 위한 보호자의 동의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는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에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협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2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혼인이 가능한 최저 연령은 만 18세로, 민법 제80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만 18세는 부모 및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19세부터 동의 없이도 혼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낙태는 현행 헌법상 규제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제269조, 제270조).

이렇게 해요

청소년에게 발생한 응급상황에 부모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 지도자가 보호자가 됩니다. 먼저 청소년이 스스로 본인의 신체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응급상황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그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수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자기결정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적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사례 2의 경우, 부모의 입장도 있지만 19세 청소년인 B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이지만 혼인과 관련해서는 민법에 의해 성인으로서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따라서 민법에 의해 청소년인 B의 의사가 존중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서 부모와의 관계도 중요한 만큼, B 역시 부모와도 깊이 상의하도록 조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판례와 결정례 및 관련법률



대법원 2014.6.26. 선고 2009도14407

환자의 명시적인 수혈 거부 의사(종교적 이유)가 존재하여 수혈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환자의 승낙(동의)을 받아 수술하였는데 수술 과정에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태에 이른 경우에, 대법원은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혈 방법의 선택을 고려함이 원칙이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진료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동의)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청소년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 ②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4 부모님이 반대하는 집회에 청소년이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궁금해요

청소년 기관의 동아리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동아리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몇몇 청소년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그런 집회에 보낼 수 없으니 제재해달라는 연락을 해 왔습니다. 안전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집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번 사례는요

인권은 기본권과 함께, 사회 구성원 개인이 사회의 제반 규율과 제도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포함하며, 참여권으로 구현됩니다. 사회 및 정치적 영역에서의 청소년 참여에 대해, 청소년은 사춘기를 겪고 있는 미성숙한 집단이고, 정체성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 사회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과, 참여권은 개인이 가지는 필연적 권리로, 청소년은 인권의 주체로서 권리의식과 문제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청소년이 가지는 참여권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합니다.

🗣️ 알아봐요

청소년의 참여권은 '자신의 국가나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한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등이 포함됩니다(최창욱외, 2006).

청소년 참여권의 영역으로는 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정보접근법 및 정보 참여, 사회 참여 및 참정권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관

련있는 사안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집회에 참여하여 관련 정보를 나누는 것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사회적, 정치적 참여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부모님들이 그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 등장하는 ‘선거권 연령 하향’ 사안은, 투표가능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기 위한 사회적 운동을 의미합니다. 누구보다 청소년의 참여가 당연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시각으로 해석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청소년 참여를 비교하여 볼 때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18세 이하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의 경우도 미국은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고, 독일 역시 선거운동 방법, 기간, 운동원 등에 대한 별도 규제 조항이 없어 청소년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¹⁷⁾

더불어 국내 현행법은 당원의 자격을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정당 가입을 통한 정치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 가입 연령을 낮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노동당은 15세, 독일의 기민당은 16세, 시민당은 14세이며, 프랑스와 호주의 경우 일부 정당들은 당원 가입에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정당 내에 별도의 청소년 조직을 두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은 일반 당원에 비해 당비를 적게 내고 다양한 정당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청소년의 사회적·정치적 참여활동은 청소년 참여 활동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참여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의 참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활동현장에서 청소년의 참여는 오히려 독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의 성격을 지닌 시설의 경우 직접적으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먼저 청소년들과 참여 목적, 참여 방법과 유의할 사항들에 대해 함께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부모님들이 우려하는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17) 디지털타임즈(2018-06-07). 'OECD 중 한국만 선거연령 19세... 18세로 못 낮추는 이유'.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60802101857045001&ref=naver

판례와 법령 및 관련법률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24조(참여권) ① 어린이·청소년은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타인과 자유롭게 소통하여 동료들 만들고 모임을 가질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들의 의견을 모을 권리가 있다.

④ 어린이·청소년은 공개된 장소에서 의사를 표현하거나 행사를 열 권리가 있다.

⑤ 어린이·청소년은 단체에 참여하고 자치활동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어린이·청소년은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직접 선출하거나 선출할 방법을 스스로 정할 권리가 있다.

⑦ 어린이·청소년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⑧ 어린이·청소년은 시에서 직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한 사업과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⑨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참여활동, 자치활동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⑩ 어린이·청소년이 참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09 안전에 관한 권리



1 기관에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나요?

? 궁금해요

한 달 전부터 청소년 기관에서 청소년지도사로 근무를 시작한 A는 안전사고와 관련한 보도가 나올 때마다 혹시나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됩니다. 함께 근무하는 선배지도자와 우리기관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싶은데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이런 사례는요

청소년은 청소년 기관에서 안전하게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청소년 기관은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기관에서는 청소년이 참여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안전수칙 위반, 부주의, 안전교육 미비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청소년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하는 예방매뉴얼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할까요?

알아봐요

청소년 기관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곳으로, 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환경에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기관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안전한 청소년 환경이란 시설과 설비 및 교구와 그 사용에 있어서 위험요소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사고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역동적인 개념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기관의 실내·외 제반 시설과 설비 및 환경을 미리 점검하여 사고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청소년 기관 환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잠재적 안전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안전매뉴얼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성원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여 철저한 대비 체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에는 청소년 기관에서 프로그램과 행사를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가이드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처리를 위한 준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기관의 안전 취약지구에 대한 유형별 사고 대응 방법과 안전교육의 내용을 포함하여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의 교육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의식을 제고합니다.

이렇게 해요

청소년 기관에서는 청소년활동과 밀접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사고에 대한 예방 매뉴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전사고는 청소년활동 중에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정상적인 청소년활동 이외에 활동이 시작되기 전 시간이나 활동에 참여하거나 끝난 후에 이동하는 시간에 발생하는 사고도 넓은 의미의 안전사고에 포함됩니다. 안전사고예방 매뉴얼 제작을 위해 먼저, 청소년 기관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 장소, 유형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를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에 의한 분류에서는 청소년활동 중에 일어나는 사고, 휴식시간 중의 사고, 이동 중 사고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장소에 의한 분류에는 강의실, 강당 등의 기관 내에서의 사고, 기관 밖에서의 사고, 외부 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른 분류에는 청소년 사이의 사고, 청소년과 지도자 사이의 사고, 청소년에 의한 사고, 시설물 하자에 의한 사고가 포함됩니다. 시간, 장소, 유형에 따라 예상되는 안전사고가 파악되면 이에 따른 사고대응 기본지침, 안전사고 보고 체계, 사고예방과 사고발생시 조치, 사고발생 시 담당부서별 역할과 조치사항 등을 결정합니다. 작성된 안전사고 매뉴얼은 기관에 부착하거나 비치하여 청소년 및 지도자가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고처리 운영체계 예시

진행 단계	수행 업무	업무 수행
사고 발생		
↓		
사고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발견자 → 안전담당부서(안전관리자) → 기관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자
↓		
사고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 시 사고대책본부 구성 • 사고피해 확대 방지 조치 • 책임자에 의한 응급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자 • 안전담당부서 책임자
↓		
사고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규명 •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담당부서 책임자
↓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방지 대책 수립 • 기관의 장에게 보고 • 책임자는 재발방지대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담당부서 책임자
↓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발방지 대책시행 여부 확인 • 사고 분석결과를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장 • 안전담당부서 책임자

판례와 법령 및 관련법률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11조(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① 어린이·청소년은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을 해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과 협력한다.

「교육기본법」

제17조의5(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시기,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 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안전교육)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위생점검)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위생점검을 실시하려면 미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그 종합 안전·위생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또는 그 통보 후에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위생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위생점검 결과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 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보수, 위생상태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위생점검의 주기, 절차, 방법 및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방법·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법률 중 청소년활동안전에 관한 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등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활동안전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있으며, 관련법에서 안전을 규정하는 내용에는 청소년지도자의 자격기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활동의 유형, 청소년건강상태, 보험가입, 인증프로그램 절차, 안전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2 청소년 활동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제도와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나요?

? 궁금해요

청소년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급하게 강의실로 뛰어가던 A가 수련관 복도에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졌습니다. 청소년지도자와 수련관 직원들이 뛰어나와 119에 신고하고 긴급조치를 취하여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쓰러지면서 머리와 팔 등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보호자가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는데 활동과 관련한 부상에 대한 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 이번 사례는요

청소년 기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학부모, 기관운영자, 국가 등의 책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책임 분쟁 해결을 위한 지침이나, 규정도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보상절차에 따라 처리하기 보다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나 청소년활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체계를 살펴봅니다.

🗣️ 알아봐요

청소년은 안전하게 교육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무엇보다 청소년의 생명, 신체, 건강이 유지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를 근거로 청소년 기관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살펴보면, 먼저, 청소년교육과 활동이 진행되는 청소년현장에서도 운영자와 지도자가 친권자를 대신해서 청소년에 대해 보호감독의무를 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호감독의무는 친권자 등 법정감

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청소년 기관 내에서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집니다. 청소년 기관의 교육활동과의 밀접한 관련성, 사고 발생의 예측가능성과 사고예방의 기대 가증성 등이 존재할 때 운영자와 지도자가 지도·감독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교육활동 중에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이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을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질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전한 청소년활동을 위해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청소년활동 주최자는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은 청소년활동 주최자가 청소년활동을 수행하는 활동장(지역) 내에서 청소년활동 참가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청소년 기관의 운영자와 지도자는 청소년활동의 전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청소년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는 돌발성, 다양성, 연쇄성, 모방성 등의 위협적인 속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안전사고 위험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대책을 통하여 위험의 크기와 발생 횟수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이동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주의를 할 것과 휴식시간에 장난을 치지 말도록 하는 등의 사전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예방교육이 진행되더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기관에서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가입한 보험 여부 및 보상(배상) 범위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보험적용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활동 시작 전이나 활동이 마무리 된 후 이동시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배상)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범위가 사고건당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참가학생 규모에 따라 보상(배상) 규모가 충분치 않을 수 있으므로 참가인원 대비 보상(배상) 규모를 확인하고 기존 보험으로 보상범위가 충분치 않은 경우 행사기간

동안 적용이 가능한 별도 보험의 가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여행자 보험, 기존 보험에 특약추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합니다.

판례와 결정례 및 관련법률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다111961

학생이 등교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급하게 교실을 향해 뛰어가다가 학교 복도에서 심계항진 및 호흡곤란 등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사고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사고와 갑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되었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정규 활동 시간 외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지도자의 책임이 있나요?

? 궁금해요

청소년 기관에서 운영하는 배드민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담당강사를 기다리던 A는 친구들과 체육관에 있는 탁구공을 배드민턴 라켓으로 휘둘러 치는 장난을 하던 중 날아간 공이 함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체육관에 있던 B의 입부분을 강타하여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정규 활동시간이 아닌 대기 시간에 벌어진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청소년지도자가 배상책임을 질까요?

이벤 사례는요

청소년활동이 시작되기 전에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지도자의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받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간의 놀이나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본 사례와 같이 청소년활동이 시작되기 전이나 마무리된 후 등 정규활동 시간 이외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지도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을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대응시스템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아봐요

본 사례와 같이 프로그램 시작 전·후에 청소년 간에 폭행이나 장난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청소년의 과실에 일차적 원인이 있으므로 대체로 청소년지도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판례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우발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가해학생은 민법 제 750조에 근거해서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민·형사상 연령 제한으로 자신의 책임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지능이 없다고 보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의 부모나 안전사고가 일어난 기관을 대상으로 피해보

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정규활동 시간에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판례에서는 교사의 감독·관리·보호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면서 휴식시간이라 하더라도 교사의 의무가 끝난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 자신에 의한 사고일지라도 지도자의 사전 안전지도 진행과 사고의 예견 가능성 여부가 사고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관건이 되기도 하며, 이러한 점을 소홀히 했을 경우 지도자의 지도 감독 의무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기관에서는 평소에 청소년들에게 규정과 질서를 잘 지키도록 철저하게 안전교육을 시켜야 하며 항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사전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요

청소년 기관에서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휴식시간이라도 지도자의 의무가 끝난 것은 아니므로 지도감독 의무가 인정됩니다.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시간에는 가급적 자리를 비우지 않고 출석하여 청소년을 지도해야 합니다. 활동 진행이나 휴식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울 때는 다른 지도자나 보조지도자가 청소년을 보호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황판단 능력이 부족한 초기청소년을 지도할 때에는 발달단계에 따른 행동양식을 고려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하더라도 어떤 이유로든 청소년 기관에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 피해청소년의 회복을 지원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당한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판례와 법령 및 관련법률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51095

중학교에서 학년 계발활동 야구 수업 중 밖에 비가 내려 감독교사의 지시로 컨테이너 박스에서 대기하던 사이에 학생 A가 구석에 있던 아이스박스에서 얼음을 꺼내 던지고 학생이 이를 야구배트로 받아 쳤는데 얼음파편이 학생 B의 왼쪽 눈에 맞아 실명하는 사고에 대해 가해학생들은 책임무능력자이므로 가해학생을 감독할 법정업무자인 부모가

가해학생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해당 중학교의 감독교사는 학생들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중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경기도는 사용자로서 피고들과 연대하여 이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Miller v. Yoshimoto (56 Hawaii 333, 536 P. 2d 1195, 1975)

하와이 중학교에 다니는 Miller가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Yoshimoto가 건물 위에서 던진 돌을 맞아 실명하여 인공 눈을 넣게 되었다. 상급법원에서는 하와이 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으나 하와이 대법원은 적절한 감독의무는 위험요소가 특별한 감독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인 감독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즉, 귀가하는 학생에게 돌을 던져서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발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32조(어린이·청소년간 폭력의 방지 등) ① 시설설치관리자는 어린이·청소년간의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설설치관리자는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들을 상대로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설설치관리자는 그 직원에 대하여, 어린이·청소년간의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한 연수 등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사고 위험이 있지만 꼭 해야 하는 활동이 있다면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궁금해요

청소년 기관의 과학동아리에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열전도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도구에는 인화성이 강한 알코올과 알코올을 적신 솜 등이 있었는데, 실험을 진행하다가 불꽃이 알코올솜에 튀어서 가까이 서 있던 청소년 A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해 시설과 지도자는 어떤 책임이 있고 또 평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이번 사례는요

체험학습과 경험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청소년 기관에서도 다양한 실험과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활동이나 실험활동에서는 유해하고 위험한 물질들을 많이 다루고, 인화성 물질인 알코올과 가스 등을 사용하는 실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여부는 사고의 원인물질과 청소년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것과 활동을 진행한 청소년지도자가 안전지도를 제대로 진행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이 예상되는 청소년활동에서 청소년 기관과 지도자는 어떤 관리책임이 있을까요?

🗣️ 알아봐요

모든 활동에서는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계 혹은 장비를 활용한 실습에서는 더욱 주의를 요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는 지도자의 감독과 사고 원인 간의 관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사는 직무상 과실 또는 고의가 인정되면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미국의 판례에서는 학생들이 활동 중에 사용한 원인물질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거나 교사가 안전사고 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타당한 행동을 하였으며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진행하였다면 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특별히 위험성이 높아 안전사고의 예견가능성이 높은 교육활동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각별한 대비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인화성이 강한 알코올 등을 수거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뒷정리를 맡기고 현장을 떠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교사에 대해 손해배상액 결정에 참작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청소년 기관에서도 청소년지도자가 활동과정에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특히 실습실 내의 유의사항 등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거나 안전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화재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지도를 하지 않았거나 위험성 높은 활동에 대해 지도자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청소년이 당한 사고와 지도자의 부주의나 과실 간의 인과관계 여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활동이나 환경에서의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 여부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예측가능성이 큰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사전대비를 제대로 안했다면, 그에 따른 지도자의 책임이 법률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 중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자재 사용 방법 및 실습·실습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같은 안전주의의무에 대한 인식이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게 완전하고 신속한 보상구제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청소년 기관에서의 활동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구제를 고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안전사고의 보상은 교육권 보장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오는 시간부터 활동을 마치고 귀가할 때까지 위험을 당하여 다치는 일이 없다고 보살펴야 하며, 활동에 이용하는 시설, 설비, 기구, 자료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보관을 신경 쓰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사전에 안전한 이용을 위한 주의를 주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타당한 감시를 하는 등의 감독의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울지방법원 98가합58318

학교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열기구 띄우기 실험을 한 후, 지도교사는 실험이 끝나고 뒷 정리를 학생들에게 맡긴 채 현장을 떠났다. 학생들끼리 추후 시험을 하던 도중 화재가 발생하여 A학생은 화염화상 체표면적인 35%와 양수지부, 하지부 등에 2~3도의 화상을 입었다. 과학실험반 학생들의 나이, 솜을 태우는 실험, 인화성 물질이 남아있던 상황 등을 미루어보아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분명이 있었으며, 지도교사는 이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도교사는 인화성이 강한 알코올 등을 수거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뒷 정리를 맡기고 현장을 떠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에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액 결정에 참작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ixmann v. Somerset Public Schools et al.(266 N. W. 2d 326, 1978)

알코올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던 중 플라스틱 손가락에 불이 붙었고 이를 끄기 위해 공중에서 흔들다 불꽃이 알코올 비이커에 옮겨 붙게 되었다. 실험 전 교사는 시범을 보이면서 알코올은 인화성이 있으므로 실험에 주의해야 한다고 공지하였다. 불을 끄려던 교사가 비이커를 넘어뜨려 학생이 화상을 입게 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교사가 60%의 손해배상을 질 것을 판시하였다. 그러나 상급심에서는 학생들이 알코올이 인화성 물질로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연령이었고 교사가 불을 끄려다 비이커를 넘어뜨린 행동이 위급상황 대처에 효과적이지 않았지만 타당하고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진행하였음에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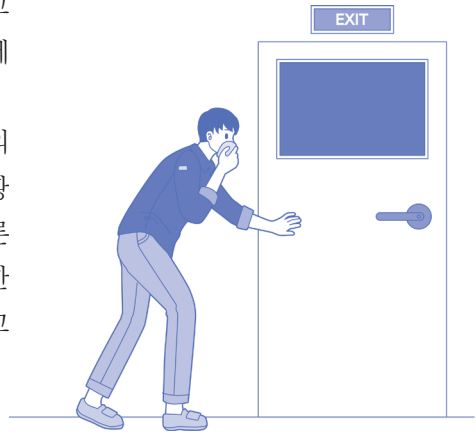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하 "위기상황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에 대비

한 대응계획 등의 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상황 매뉴얼(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을 포함한다)의 작성·관리 및 훈련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5 물놀이 등 야외 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나?

? 궁금해요

청소년 기관에서 진행하는 2박 3일 캠프에 참여한 중학생 A와 친구들은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였습니다. 계곡의 깊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다이빙을 하다가 바닥에 몸을 부딪치며 골절사고를 당했습니다. 야외활동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 청소년 지도자는 어떤 주의의무를 특별히 이행해야 할까요?

📖 이번 사례는요

야외활동에서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본 사례와 같이 해양·수상활동의 경우에는 기본 안전장비나 구명조끼 미착용, 적절한 준비운동 미실시, 수영금지구역에서의 수영, 무리한 신체움직임 등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야외활동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 기관과 지도자는 특별히 어떤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할까요?

🗣️ 알아봐요

청소년이 안전하게 교육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에 대하여 기관에서는 안전보장의무와 안전배려의무를 갖고 있고 있습니다. 교육법에서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의 여부를 고려할 때는 상해에 대한 예견성, 교사의 행동과 학생의 상해 간의 관계,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행동과 그에 상응하는 교육자의 적절한 주의 및 감독과 경고제공 여부, 상해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가 교육자의 관리·감독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학생의 나이와 성별, 경험에 따라 상해가 교사의 보호·감독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주요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지도자도 청소년활동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여부를 고려할 때 안전사고 예견성, 주의의무의 이행, 활동 중 관리와 감독의 의무,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연령, 성별, 경험 등을 고려해서 세심한 주의의무를 시행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야외물놀이도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수심이 깊은 곳에 안전표지를 하는 등 주의를 하더라도 피교육자의 수영능력과 인원 등을 고려하여 장소선택의 적정을 기함은 물론, 수영지도방법과 감독에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에 대해 교원의 배상책임이 있음을 판시하였고, 청소년 활동 중에 일어난 안전사고 사건에서도 청소년지도자가 위험이 예견되는 위험한 상황에서 이를 간과하여 안전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청소년 기관을 벗어나 외부활동을 진행할 때는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연령, 성별, 경험을 고려하여 장소 선택의 적정을 기해야 합니다. 하천 폭포와 같은 사고위험이 많은 곳에서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피해야하고 그러한 곳에서 활동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인원 점검 등의 철저한 안전수칙을 지키는 등의 안전사고를 예견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요

청소년 기관을 벗어나 야외에서 진행되는 활동에서 청소년 기관과 지도자는 안전에 대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배려의무를 다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합니다.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그 유형에 따라 사전 안전 점검과 활동 시 주의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뒤에 첨부해 놓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야외활동 안전체크리스트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와 결정례 및 관련법률

대전지방법원 2014.7.25. 선고 2014노177

태안사설해병대캠프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 학교 학생들이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해서 일어난 사고로서, 구명조끼를 벗고 바다로 들어가라는 교관의 지시를 따르다가 깊은 갯골에 빠진 뒤 그중 5명의 학생들이 파도에 휩쓸려가 실종, 사망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교관들이 위험이 예상되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였고, 학교 인솔교사를 차단하는 등 폐쇄적으로 활동을 진행한 책임, 위험한 상황에 대한 통제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여 배상책임을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2.4.9. 선고 2001도6601

경기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파도수영장에서 물놀이 중 갑자기 물을 먹고 엎어진 상태로 있었다. 안전요원이 이를 발견하고 수영장 밖으로 끌어내어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으나, 후송도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기본적인 안전장비, 구명조끼 착용, 충분한 사전공지, 위험성 높은 활동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등의 안전관리에 충실했고 익사사고 원인과 안전지도자 간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점,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단정짓긴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하 "위기상황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의 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상황 매뉴얼(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을 포함한다)의 작성·관리 및 훈련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참고해요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야외활동 안전체크리스트

1. 박람회·축제·공연

사전안내	활동 시 주의사항 및 사고 시 대처사항을 안내했는가?	
	비상시 대피안내도를 제시했는가?	
	사전 현장답사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대응했는가?	
	안전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였는가?	
활동환경	비상시 안내유도등을 부착하고 작동여부를 확인했는가?	
	교통통제 및 질서유지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했는가?	
	행사의 사고 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는가?	
	우천, 폭염 등 기상상황에 따른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는가?	
	무대의 면적과 하중은 공연에 적합한 수준인가?	
	시설의 규모는 활동내용과 인원수에 적절한가?	

2. 외부연계활동

사전안내	활동 시 주의사항 및 사고 시 대처사항을 안내했는가?	
	사전 현장답사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대응했는가?	
	버스 등 운송수단 이용에 따른 안전수칙 안내했는가?	
활동환경	연계기관에 비상시 대처방안이 수립되어 있는가?	
	소화기의 비치여부 및 관리 상태를 확인했는가?	
	활동의 내용 중 고위험 활동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참여청소년의 연령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었는가?	
	시설의 규모는 활동내용과 인원수에 적절하였는가?	
	위생안전과 관련된 장비가 적절하게 지급되었는가?	

3. 공동체 활동, 명랑운동회, 추적활동 등

사전안내	활동 시 주의사항 및 사고 시 대처사항을 안내했는가?	
	공간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였는가?	
	사전 현장답사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대응했는가?	
활동환경	비상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소화기의 비치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각 포스트 별로 구급용품을 적절하게 비치하여 상황에 맞게 조치하였는가?	
	활동의 내용 중 고위험 활동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시설의 규모는 활동내용과 인원수에 적절한가?	

4. 숲체험, 캠핑, 모닥불놀이, 야영 등

사전안내	활동 시 주의사항 및 사고 시 대처사항을 안내했는가?	
	안전사고 후 긴급연락처에 대하여 안내하였는가?	
	비상 시 대피방법을 안내하였는가?	
	활동에 적합한 복장 착용을 안내하였는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는가?	
활동환경	사전 현장답사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대응했는가?	
	화기 사용이 있을 경우 소화기를 비치하였는가?	
	안전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였는가?	
	활동의 내용 중 고위험 활동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우천, 폭염 등 기상상황에 따른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는가?	
	응급호송 등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했는가?	
	사고 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을 가입하였는가?	
	화기 사용 시 철저한 잔불제거를 통해 화재를 예방하였는가?	
직접 조리하는 활동 시 식자재는 신선하게 보존될 수 있는가?		

부
록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시행 2018. 3. 22.] [서울특별시조례 제6851호, 2018. 3. 22.,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8>

1. “어린이”이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만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청소년”이란 만 12세 이상 만 19세 미만(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 나. 시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다.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
 - 라. 시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2. “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 그 외 어린이·청소년들이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을 말한다.
3. “학교”란 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어린이·청소년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보호·양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어린이·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6. “소수자”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탈가정, 이주, 외국인, 종교, 탈북, 성소수자, 노동, 임신 또는 출산, 학습곤란, 학교에 다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 조례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② 시설의 장, 보호자 등은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존중·실현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에서 그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민간사업자나 단체 등은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국가 등への 요청)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 및 자치구 조례와의 관계) ①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5.18>

제2장 어린이·청소년이 누려야 할 인권

제1절 원칙

제6조(인권의 주체성과 인권보장의 원칙) ① 어린이·청소년은 인권의 주체이며, 자신의 인권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일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차별금지의 원칙) ① 어린이·청소년은 나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지역, 국가, 민족, 언

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시장,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성장환경과 건강에 관한 권리

제8조(성장환경에 관한 권리) ① 어린이·청소년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비상 상황에 처하거나 입양될 경우 자신의 이익이 가장 먼저 고려되도록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건강) ① 어린이·청소년은 자연환경과 어울릴 기회를 가지고 충분한 햇볕과 쾌적한 공기, 적절한 녹지가 확보된 공간에서 필요한 영양을 공급 받으며 거주·활동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등 보건·의료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며, 회복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기회와 공간을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여성 어린이·청소년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배려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휴가나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⑤ 어린이·청소년은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보호받고 이러한 물질의 생산과 거래에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⑥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사이에 증가하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청소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10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어린이·청소년은 모든 종류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성폭력, 학대, 착취, 괴롭힘, 비하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특히 소수자 어린이·청소년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유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이 폭력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청소년의 폭력피해 실태를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비폭력적이고 평화로운 가정 및 교육환경,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① 어린이·청소년은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을 해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과 협력한다.

제4절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받을 권리

제12조(양심과 종교의 자유) ① 어린이·청소년은 양심·사상·종교의 자유를 누린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행위를 강요받지 아니하며, 특정한 종교나 사상에 대한 학습이나 행사참여를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13조(개성과 표현의 자유) ① 어린이·청소년은 있는 그대로의 그 자신이며, 자신 또는 소속 집단이 고유하게 가진 문화와 언어 등을 간직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외모, 복장 등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타인과의 차이가 인정될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5절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에 관한 권리

제14조(사생활의 자유 등) ① 어린이·청소년은 사생활을 보장 받고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명예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약점이 공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③ 누구든지 범죄수사나 어린이·청소년 상호간의 폭력에 대한 조사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린이·청소년의 일기장, 핸드폰 등에 기록된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어린이·청소년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국·내외의 정보 및 자료에 접근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특히 소수자 어린

이·청소년들은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자료, 교육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자신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며, 자신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 또는 불필요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대해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③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정보, 사적 기록물, 소지품이 부당하게 수집되거나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어린이·청소년의 개인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할 경우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 당사자와 보호자의 동의없이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알기 쉬운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절 교육·문화·복지에 관한 권리

제16조(교육에 관한 권리) ① 어린이·청소년은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지나친 경쟁에 내몰리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폭력이나 억압이 수반되는 부당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며,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학원에 다닐 것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④ 학교밖 어린이·청소년은 교육에 필요한 공간과 교육비를 지원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어린이·청소년은 교육 및 진로에 관련된 정보와 지침을 알고 이용하며, 교육기관·학습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시장은 빈곤·장애·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7조(놀이 및 쉼 권리) ① 어린이·청소년은 놀이, 여가 및 휴식을 즐기며, 충분한 수면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自我)의 형성과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하여 지나친 학습부담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안전한 놀이공간과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④ 어린이·청소년은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⑤ 어린이·청소년의 쉼 권리 보장을 위해 학원의 휴일 및 심야 수업시간은 제한되어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18조(문화·예술·체육활동에 관한 권리) ① 어린이·청소년은 다양한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다른 사람의 동의나 승낙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위해 청소년시설,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의 공간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시장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청, 학교, 관계기관 및 시설,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어린이·청소년이 다양한 문화·체육·예술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운영할 때에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9조(복지에 관한 권리) ① 어린이·청소년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 발달에 유해한 모든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④ 시장은 빈곤·장애·소수자 어린이·청소년 등 자립 및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⑤ 시장은 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어린이·청소년에게 낙인감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⑥ 시장은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9>

제7절 노동에 관한 권리

제20조 (노동인권) ① 노동하는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노동하는 청소년은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사업주는 노동하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제21조 (어린이·청소년 노동의 보호) ① 사업주는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무를 맡겨서는 안된다.

② 사업주는 청소년을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된다.

③ 사업주는 법령에 정한 최저연령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을 일하게 해서는 안된다.

제22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청소년이 적절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다.

제8절 자기결정권 및 참여할 권리

제23조(자기결정권) 어린이·청소년은 진로, 취미, 학업 등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참여권) ① 어린이·청소년은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타인과 자유롭게 소통하여 동료를 만들고 모임을 가질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들의 의견을 모을 권리가 있다.

④ 어린이·청소년은 공개된 장소에서 의사를 표현하거나 행사를 열 권리가 있다.

⑤ 어린이·청소년은 단체에 참여하고 자치활동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어린이·청소년은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직접 선출하거나 선출할 방법을 스스로 정할 권리가 있다.

⑦ 어린이·청소년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⑧ 어린이·청소년은 시에서 직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한 사업과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⑨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참여활동, 자치활동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⑩ 어린이·청소년이 참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권리보장을 위한 권리) 어린이·청소년은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의 상담 및 구제절차에 대해 알 권리, 상담 및 구제신청을 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3장 인권보장

제1절 가정에서의 인권 보장

제26조(보호자 등에 의한 인권의 보장) ① 보호자는 양육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이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할 때 어린이·청소년에게 최선의 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며, 어린이·청소년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양육의 지원) ① 보호자는 어린이·청소년의 양육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지며,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을 양육하는 보호자를 상담·교육·서비스 제공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자가 어린이·청소년을 양육하기에 곤란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황을 특히 배려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고용된 시민이 안심하고 어린이·청소년을 양육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28조(학대 및 폭력의 금지) ① 보호자는 양육하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체벌을 포함한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가족 내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어린이·청소년이 학대나 폭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가정내 폭력 예방을 위해 보호자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학대로부터의 구제 및 그 회복) ① 시장은 학대를 받은 어린이·청소년에 대해 신속하고도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고, 어린이·청소년이 피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를 취할 때에는 2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어린이·청소년의 상황을 배려하여야 하며, 장애 어린이·청소년이나 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학대를 받은 어린이·청소년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절 시설에서의 인권보장

제30조(환경의 정비 등) ① 제2조 제2호에 의한 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설치관리자”라고 한다)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고, 적절한 휴식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청소년이 생활하는 시설의 설치관리자는 가능한 한 가정과 같이 편안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설설치관리자는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호자, 지역주민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1조(학대 및 폭력의 금지 등) ① 시설의 장 및 직원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체벌을 포함한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해서는 안된다.

② 시설설치관리자는 그 직원에 대하여 학대 및 체벌의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원에서의 체벌 등 폭력을 없애기 위해 교육감과 협력해야 하며, 시설에서의 학대 및 체벌 예방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지원, 실태파악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어린이·청소년간 폭력의 방지 등) ① 시설설치관리자는 어린이·청소년간의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설설치관리자는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들을 상대로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설설치관리자는 그 직원에 대하여, 어린이·청소년간의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한 연수 등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3조(상담 등) ① 시설설치관리자는 학대 및 체벌, 어린이·청소년간의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에 관한 상담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설치관리자가 제1항에 관한 상담을 받았을 때에는, 어린이·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그 상담의 해결에 필요한 사람, 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어린이·청소년의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시설관계자는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을 행한 어린이·청소년에 대하여도 필요한 배려를 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34조(어린이·청소년의 정보 관리) ① 시설에서 어린이·청소년 본인에 관한 정보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 중 어린이·청소년의 이해에 영향을 주는 정보는 그 작성 또는 수집에 있어서 어린이·청소년 본인과 그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③ 시설에서 그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 어린이·청소년 본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④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정보는 시설의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되거나 외부에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⑤ 어린이·청소년이 시설을 그만둔 경우에, 시설은 법령에 의해 관리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그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35조(참여 및 적정 절차) ① 시설설치관리자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시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운영에 관해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설에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등이 행하여질 경우에는 그 처분 등을 결정하기 전에, 그 어린이·청소년 본인으로부터 사정, 의견 등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절 학교에서의 인권보장

제36조(협력과 지원) ① 시장은 학교내에서도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생이나 교사 등을 상대로 인권에 관한 교육,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거나 생활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적 교육체계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절 지역사회에서의 인권보장

제37조(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간의 확보와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별, 동별로 존재하는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조사하고 그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등 어린이·청소년 전용공간이 어린이·청소년들이 그 목적대로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8조(정보에 관한 권리 보장) ① 시장은 성차별적이거나 인권침해적인 사진, 그림, 전시물을 규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활용가능한 공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서관 등에서 어린이·청소년들이 합리적 이유없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도서나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9조(노동인권의 보장) ① 사업자는 노동하는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작성·교부하고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거나 기타의 권리를 침해한 사업장을 각종 우대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 소속기관, 구청, 노동관련 행정관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구제활동에 대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업주에 대해 노동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노동을 하거나 전문계 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필수적·우선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0조(탈가정 어린이·청소년) ① 시장은 탈가정 어린이·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쉬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탈가정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에서 어린이·청소년들의 사생활정보가 보호되고 학대경력 있는 보호자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인권 보장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탈가정 어린이·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1조(학교밖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차별금지 및 지원) ① 시장은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다니는 어린이·청소년(이하 “학교밖 어린이·청소년”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학교밖 어린이·청소년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 대중교통 이용, 각종 프로그램 참여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42조(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급식비, 교육비 지원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활동에 필요한 공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다니는 빈곤 어린이·청소년이 그로 인하여 복지 지원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그 내부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3조(시민참여 및 협력) ① 시민은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학대나 폭력을 발견한 경우에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되도록 관련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시민,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단체와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③ 시장은 경찰, 법원 등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절 빈곤·장애·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보장

제44조(빈곤·장애·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보장) ① 시장, 시설의 장 및 직원 등은 빈곤·장애·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상담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 시설의 장은 장애 어린이·청소년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을 확보하며,

자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빈곤 어린이·청소년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탈북 어린이·청소년의 적응을 지원하고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다문화가정, 이주민가정, 외국인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임신 또는 출산을 하게 된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양육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제45조(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① 시의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중요 정책과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에 관한 대응방안을 심의하고,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어린이·청소년 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결과의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
4. 시장의 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
5.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 정책, 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6.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
7. 어린이·청소년 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조사 보고서의 발간
8. 이 조례에서 정한 시행규칙의 제정에 관한 자문
9. 그 밖에 시장, 시민인권보호관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 수행에 있어 시장 또는 시민인권보호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어린이·청소년 인권 정책에 관하

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선출된 2명의 어린이·청소년
3. 시민 중에서 어린이·청소년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중 추천을 통해 선정된 사람
4. 서울특별시회의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서울특별시의 담당부서의 장

④ 위원회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2>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사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4.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2회 이상 연속으로 불참한 사람

제4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 연 4회 이상
2. 임시회 :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시 담당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을 공동간사로 할 수 있다.

⑥ 시민인권보호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반드시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인권정책협력체계)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시와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 교육청 및 교육청의 인권추진기구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인권정책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제50조(설치)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 어린이·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어린이·청소년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평가와 정책제안 제출
2. 어린이·청소년 인권 침해에 관한 대책을 시장, 시의회나 지역사회에 권고
3. 어린이·청소년의 예산참여과정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에 전달
4.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5.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

제5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을 한 후, 추천절차를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균형있게 참여하도록 선정한다. 다만, 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참여는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참여하며, 위원구성과정에서 보호자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2회 이상 연속으로 불참하면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
-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은 담당공무원이 맡고, 어린이·청소년 중에서도 공동간사를 둘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는 연령대별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⑧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은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⑨ 차지구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가 구성될 경우에 위원회는 이와 협력하여 활동한다.

제52조(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5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4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55조(의견 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 ②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의견제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나 시의회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56조(수당 등) 위원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되, 자발적 참여의 취지와 맞지 않는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6장 인권침해에 대한 규제

제57조(상담 및 구제기관) ①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의해 설치된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수행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1인 이상을 어린이·청소년 인권 전담 보호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8조(상담 및 구제절차)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당한 어린이·청소년 본인 또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침해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시민인권보호관에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받은 시민인권보호관은 해당 사안이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속하게 알려 「아동복지법」 제27조에 따른 출동, 격리, 보호, 치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상담 또는 구제신청을 받은 시민인권보호관은 사건에 대해 조사한 후에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0조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인권침해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게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④ 시민인권보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민인권보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59조(준용)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4장에 따른다.

제7장 교육, 실태조사 및 평가

제1절 인권교육과 홍보

제60조(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날) ①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어린이·청소년과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1조(홍보) 시장은 지역사회나 가정에서 어린이·청소년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의 내용 등 어린이·청소년 인권과 조례의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2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시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등 각종 교육의 기회에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교육이 추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법률 관련자 그 외 어린이·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 대해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권에 대한 학습 등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교육, 연수, 학습 등에는 빈곤·장애·소수자 어린이·청소년들에 대한 차별금지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3조(시민활동의 지원)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절 실태조사와 평가 등

제64조(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인권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청소년 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방향
2. 제1호의 기본 방향에 따른 권리분야별·생활공간별 실천전략
3. 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4.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조사·연구 및 인권 교육 실시 방안
5.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문화 방안
6. 다른 기관과의 협력 방안
7. 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8. 빈곤·장애·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인권 보장 방안
9.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 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어린이·청소년, 보호자,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5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①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인권실태 조사) ①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시가 위탁하거나 재정지원을 하는 어린이·청소년 관련 시설들에 대한 평가에 인권교육·연수의 실시여부, 인권보장수준 등 인권에 관한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8장 보칙

제67조(규칙) 시장은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

- 집필책임 : 최윤진(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공동집필 : 손진희(송실사이버대학교 교수)
노자은(중앙대학교 외래교수)
- 집필보조 : 심묘탁(동작구립 사당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이나은(중앙대학교 석사)
- 자문위원 : 허종렬(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이해주(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김미숙(중앙대학교 교수)
- 협력위원 : 김미숙(광진구상담복지센터 센터장)
김범구(서울시립이동쉼터 센터장)
김은영(서울시립강북드림센터 센터장)
최경학(강동구립 강동청소년누리터 센터장)
조미란(서울시립 마포청소년수련관 운영부장)
조정현(서울시립 은평청소년수련관 운영부장)

발간번호

발행일 2018. 12. 10
발행처 서울특별시
연구기관 사단법인 청소년교육전략21
편집디자인 에듀월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